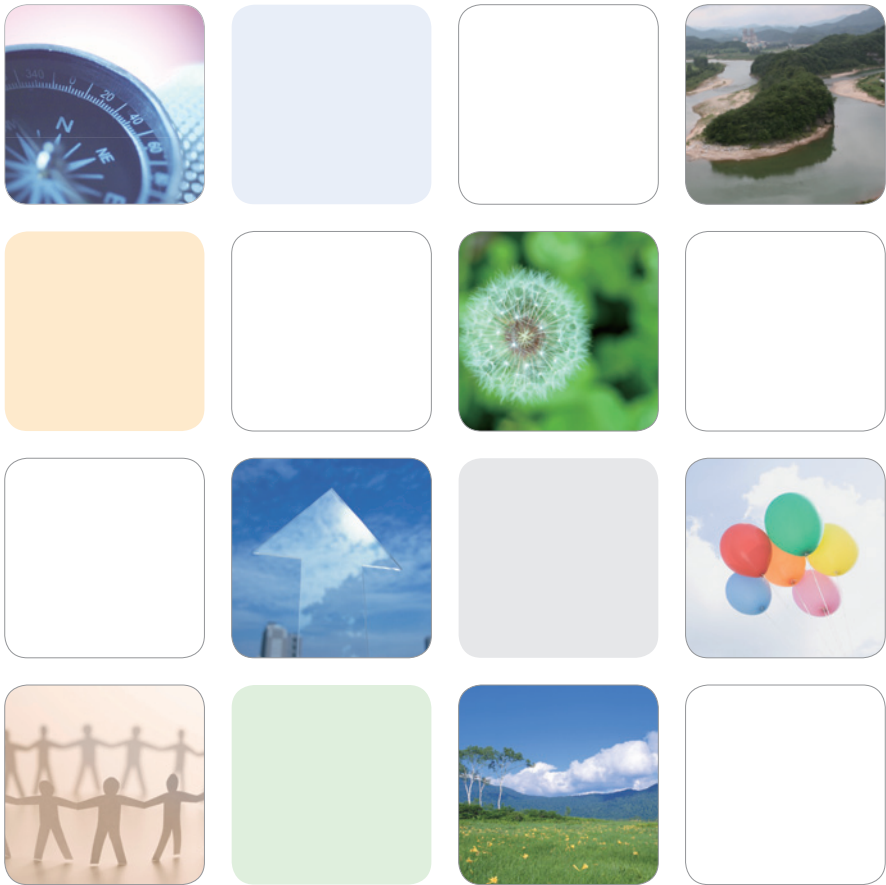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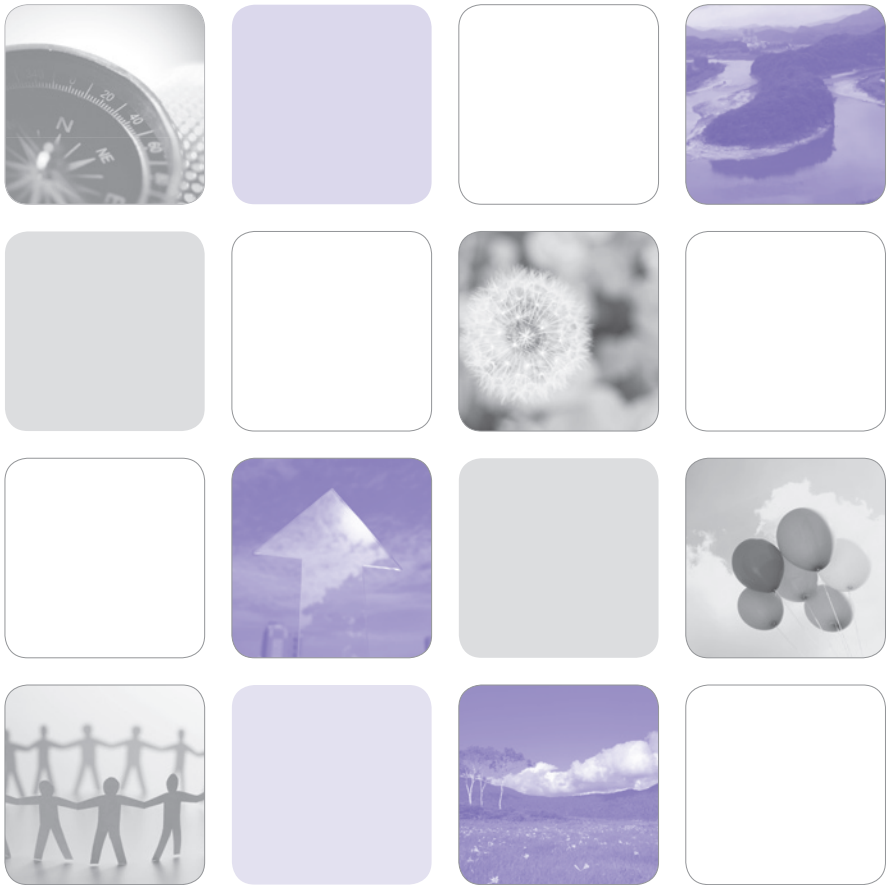
2011 일반용 통일교육지침서



일러두기

- 이 책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설립한 교육기관 및 사회 교육기관에서 통일교육을 일관성 있게 그리고 체계적으로 실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통일부 통일교육원이 관련 기관 및 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 작성한 것입니다.
- 각 교육기관에서는 본 통일교육지침서가 제시하고 있는 통일교육의 목표, 주안점, 지도방법에 따라 학습자들에게 통일교육을 실시하여 주기 바랍니다.
- 이 책은 통일과 북한 문제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이에 대한 일반적인 내용을 정리한 것입니다. 통일과 북한 문제에 대한 보다 전문적인 내용은 통일교육원에서 발간하는 「통일 문제 이해」, 「북한 이해」 등을 참조하기 바랍니다.
- 이 책의 부록에는 통일교육 현장체험 장소 안내, 학교 IPTV 통일교육 콘텐츠 안내, 2010년도 통일교육원 발간자료 안내 등이 실려 있습니다.
- 이 책의 내용과 방향 등에 대해 의견이 있으신 분은 통일교육원 교육총괄과(서울 강북구 4.19길 275, 전화 901-7182)로 연락하기 바랍니다.

2011 일반용 통일교육지침서



목 차

2011 통일교육지침서 일반용

I. 통일교육 지도방향

1. 통일교육의 목표	11
2. 통일교육의 주안점	13
3. 통일교육의 지도방법	16

II. 통일교육의 내용체계

1. 통일 문제의 이해	25
2. 북한 이해	35
3. 통일 환경의 이해	50
4. 통일 정책	53
5. 통일을 위한 과제	63

부록

통일교육 현장체험 장소 안내	68
학교 IPTV 통일교육 콘텐츠 안내	76
2010년도 통일교육원 발간자료 안내	79
통일교육 지원법	80
통일교육 지원법 시행령	86



I

통일교육 지도방향

1. 통일교육의 목표
2. 통일교육의 주안점
3. 통일교육의 지도방법

1. 통일교육의 목표

통일교육은 자유 민주주의에 대한 신념과 민족 공동체 의식 및 건전한 안보관을 바탕으로 통일을 이룩하는 데 필요한 가치관과 태도를 기르도록 하기 위한 교육을 말한다.(통일교육 지원법 제2조)

이것은 “조국의 평화적 통일의 사명에 입각하여 정의·인도와 동포애로써 민족의 단결을 공고히 하고, 자율과 조화를 바탕으로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더욱 확고히 하여, … 밖으로 항구적인 세계평화와 인류공영에 이바지함”을 천명한 우리나라 헌법전문과 “대한민국은 통일을 지향하며,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평화적 통일정책을 수립하고 이를 추진한다.”라고 규정한 헌법 제4조의 정신을 바탕으로 한 것이다.

따라서 통일교육의 목표는 미래 지향적 통일관, 건전한 안보관, 균형 있는 북한관을 정립하는 것이다.

가. 미래 지향적 통일관

우리가 추구하는 통일은 분단 이전의 상태로 회귀하는 것이 아니라 훼손된 민족 정체성을 새롭게 정립하여 자유 민주주의적 가치에 바탕을 둔 하나의 새로운 민족 공동체로 발전해 가는 창조적인 과정이다.

즉 우리가 추구하는 통일은 미래 지향적 통일이며, 이것은 자유 민주주의적 가치와 민족 공동체 의식이 선순환적 구조를 이루는 정치 공동체로서의 통일 한국을 구현하는 것이다.

따라서 통일교육에서는 자유 민주주의적 가치와 민족 공동체 의식이 상호 조화롭게 융해될 수 있는 열린 마음의 통일관을 제시하여야 한다.

나. 건전한 안보관

한반도에는 국제적 안보환경의 변화, 남북한의 군사적 대치, 북한의 핵문제 등 안보를 위협하는 여러 요소가 항시 존재하고 있다.

국가 안보는 이들 위협으로부터 우리 가족과 삶의 터전을 지키고 대한민국의 자유와 번영을 보호하는 것을 말하며, 국가 안보의 기초는 바로 국민의 건전한 안보관이다.

따라서 통일교육에서는 건전한 안보관을 바탕으로 안보 역량을 튼튼히 키울 때 우리의 통일 노력이 생산적인 결과를 가져올 수 있음을 인식하도록 해야 한다.

다. 균형 있는 북한관

21세기의 국제정치 질서는 한반도와 동북아 정세를 급격히 바꾸고 있다. 남북한 간의 관계가 복잡해지는 가운데 북한 사회의 내부 움직임도 과거와 다른 모습을 보여 주고 있다.

균형 있는 북한관이란 북한 실상을 있는 그대로 이해하면서, 장차 민족 공동체로 통합하기 위한 상대로서 인식하는 한편 우리 안보를 위협하는 경계의 대상으로서 인식하는 관점을 말한다.

따라서 통일교육은 빠르게 변화하는 대내외적 통일 환경과 북한의 실상 등에 대해 국민들이 왜곡 없이 이해할 수 있도록 이루어져야 하며, 이를 토대로 현실적 정책대안이 무엇인지를 판단할 수 있는 안목을 갖출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요컨대, 통일교육은 이러한 세 가지 목표를 통합적으로 달성하여야 하며, 이를 통해 통일에 대한 우리 사회 구성원들의 관심을 불러일으키고 의지를 굳게 갖도록 하여, 평화적으로 통일을 이루기 위한 역량을 키우는 데 힘쓰도록 해야 한다.

2. 통일교육의 주안점

가. 통일문제에 대한 관심 제고 및 통일의지 확립

사회 통일교육에서는 국민들이 가질 수 있는 통일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불식시키고 적극적 참여 의지를 갖도록 하는 데 주안점을 두고 통일교육을 하여야 한다.

국민들에게 분단의 장기화에서 오는 여러 가지 고통과 폐해를 환기시키고, 통일 이후 얻을 수 있는 다양한 이득과 혜택들을 국가적 차원에서뿐만 아니라 개인적 차원에서 구체적으로 제시하여, 통일이 분단 상황보다 더 나은 삶을 보장해준다는 확신을 갖게 해주어야 한다.

민족사적 당위성에 더하여 통일이 어떤 이득을 가져다줄 것인지를 잘 설명할 때 국민들은 통일의 필요성을 보다 잘 이해할 수 있기 때문이다.

아울러, 평화적인 방법과 민주적인 절차를 통해 우리 민족 구성원 모두가 함께 자유와 번영을 누릴 수 있는 통일을 반드시 이루어 나가겠다는 사명의식을 고취시켜야 한다.

나. 자유민주주의 가치에 대한 확신 및 민주시민의식 함양

우리가 구상하는 통일의 미래상은 민족 구성원 모두가 주인이 되고 구성원 개개인의 자유와 복지, 존엄성이 보장되는 자유민주주의의 국가이다.

이를 실현하기 위하여 사회 통일교육에서는 자유와 인권, 민주주의와 시장경제 등 보편적 가치와 질서에 대한 폭넓은 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따라서 단순히 정부 형태를 비교하는 수준을 넘어 생활 방식으로서의 자유민주주의의 가치를 깨닫게 하고, 이를 기초로 민주적 의사 결정과 문제 해결 능력, 그리고 민주적 원리와 절차에 따라 행동할 수 있는 태도를 갖도록 해야 한다.

다. 민족 공동체를 형성하기 위한 노력

통일은 단순히 분단이전 상황으로 되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미래에 더 나은 삶을 창조하기 위하여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 인간의 존엄과 가치 존중 등을 기반으로 하는 새로운 민족공동체를 형성하는 것이다.

민족공동체를 형성하기 위한 통일교육은 북한주민을 동정심이나 우월적 시각에서 바라보지 않고, 같은 민족이자 상생·공영의 대상으로 인식하는 것에서 출발해야 한다.

이와 함께 민족 지상주의와 같은 편협한 민족주의에 빠지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우리가 지향하는 민족 공동체는 단순히 혈연에 기초한 폐쇄적인 민족주의가 아니라, 다른 민족과 그들의 문화도 존중하는 열린 민족주의에 바탕을 두고 있는 것이다.

라. 국가안보의 중요성 인식

한반도에는 국제적인 안보 환경의 변화, 남북한의 군사적 대치, 북한의 핵 문제 등 안보를 위협하는 여러 요소가 항시 존재하고 있다.

따라서 사회 통일교육은 한반도의 안보 현실을 정확히 이해시키고 여러 안보 위협으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고 국가를 유지·보존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한 과제임을 인식시켜야 한다.

튼튼한 안보가 뒷받침이 되어야만 한반도에 평화가 정착되고, 이를 토대로 남북 관계가 발전되어 평화 통일을 이룰 수 있는 것이다.

마. 북한 실상에 대한 올바른 이해

분단을 해소하고 평화 통일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통일의 상대방인 북한에 대해 올바르게 인식하고 이해해야 한다.

북한은 우리와 함께 통일을 만들어가야 할 상생과 공영의 대상이며, 동시에

분단이 해소되기 전까지는 우리의 안보를 위협하는 경계의 대상이다. 사회 통일교육은 학습자들이 이같은 이중적 상황을 직시하고, 이를 균형 있게 인식하도록 해야 한다.

한편, 북한 당국의 퇴행적 행태와 비민주적 요소에 대해서는 비판 의식을 길러주되, 북한 주민은 동포애와 인도주의 차원에서 민족 공동체의 구성원으로 인식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바. 통일 대비 역량 강화

국민들에게 통일 미래를 대비할 수 있는 교육이 이뤄져야 한다. 통일 의지와 통일 정책이 아무리 잘 갖추어져 있다고 해도 통일을 실천해 나갈 역량이 구비되어 있지 않으면 통일기회가 왔을 때 이를 놓칠 수 있다.

통일교육은 통일 과정에 대한 대비만이 아니라 통일 후 남북 간 통합 과정 등에도 초점을 두어야 한다. 통일은 단순히 제도적인 통합만이 아닌 사회적이고 문화적인 측면에서의 통합까지 의미한다. 그러므로 통일을 완성하기까지 상당한 시간과 노력이 요구된다는 것을 인지시켜야 한다.

3. 통일교육의 지도방법

통일교육의 효과는 통일교육의 지도방법과 밀접한 연관성을 지닌다. 지도 방법은 교육수준의 적절한 설정, 내용전달의 효율적 방식 선택, 기자재의 활용 여부 등을 포함한다. 통일교육의 목표와 내용체계가 적절히 설정되었다고 할지라도 지도방법이 유기적으로 잘 결합되어 실시되지 않으면 성공적인 교육효과를 거두기 어렵다는 점에서 지도방법의 중요성은 더 이상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을 것이다.

가. 사실적 접근에 기초한 통일문제의 이해

사회 통일교육은 통일문제에 대한 객관적인 사실의 전달을 통해 학습자들이 문제의 본질을 정확하게 판단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어야 한다. 통일문제에 대한 정확한 정보와 지식이 확보될 경우 학습자는 이를 바탕으로 합리적인 판단을 수행할 것이며, 나아가서 해당 이슈에 대한 올바른 태도를 형성할 수 있을 것이다.

물론, 객관적 사실이 제공되더라도 학습자의 편향된 가치체계, 왜곡된 이념 성향, 논리적 합리성의 결여 등은 오도된 판단과 태도를 초래하는 요인이 될 수 있다.

이러한 가능성에도 불구하고, 통일문제에 대한 대부분의 오해와 편견이 부정확한 사실의 보유로부터 비롯된다는 점을 감안할 때 객관적 사실의 전달이 사회 통일교육의 핵심과제를 구성하는 것임은 의문의 여지가 없다.

사회 통일교육은 학습자들이 북한사회와 주민생활을 객관적이고 합리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관점을 제시해 주어야 한다. 북한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위해 북한주민의 실상에 대한 정보를 전달하고 학습자가 자율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한편, 학습자가 간과할 수 있는 사안을 재확인시키는 교육을 수행하는 방식이 고려될 수 있을 것이다.

통일환경 및 통일정책과 관련해서도 우선적으로 정확한 사실을 전달하는 것이 학습자들의 균형적인 판단을 유도하는 핵심적 요건이 될 것이다.

나. 열린 대화와 토의의 중시

일반적으로 학습자들은 열린 대화와 토의 과정을 통해 타인 의사의 존중, 의사 경청의 자세 습득, 합의도출의 역량 배양 등 민주적인 의사결정의 요건들을 습득하게 된다. 통일은 합리적 토론과 민주적 절차를 통해 수렴된 국민적 합의를 거쳐 이루어 나가야 하므로 대화와 토의의 문화 정착은 통일의 선결 조건이 아닐 수 없다.

학습자들이 통일문제를 객관적으로 이해하고 합리적으로 판단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교수자의 일방적인 주입식 교육에 의존하기보다는 열린 대화와 토의의 장을 학습자들에게 제공하는 것이 효율적일 수 있다. 대화와 토의는 통일문제에 대한 학습자들의 관심을 고취하고 자율적인 해결방안의 모색 등 통일에 대한 학습자들의 능동적 자세를 견인하는 데도 유용할 것이다.

다. 생활관련 소재를 통한 흥미와 호기심 유도

교수자는 학습자의 호기심을 유발할 수 있는 질문과 소재를 중심으로 학습 효과를 제고시킬 수 있어야 한다.

예컨대, 북한 사회의 빈부격차나 소비 행태를 우리 사회와 비교하면서 7·1 경제관리개선조치 이후의 북한 사회의 변화를 논의할 수 있을 것이다.

특히 최근 시장 확대 현상이 북한 주민과 사회에 미친 영향, 북한 청소년의 문화생활이나 가정 내 남녀간의 역할 분담 등을 우리 사회와 비교하는 것 등도 북한 사회에 대한 이해를 흥미롭게 이끄는 방안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교수자는 학습자로 하여금 통일이 그들의 실제적인 삶과 어떻게 관련되어 있는가를 생각하게 함으로써 통일문제의 논의를 추상적이 아닌 구체적 수준에서 진행할 수 있다.

예를 들어, 통일의 필요성에 대하여 학습할 경우 “분단으로 인하여 여러분은 지금 어떠한 불이익과 제약을 받고 있는가” 혹은 “통일이 여러분에게 가져다 줄 혜택과 이익은 무엇인가”와 같은 질문을 활용하며 문제에 구체적으로 접근하는 것이 가능할 것이다.

라. 학습자의 특성에 따른 ‘맞춤형 교육’

사회 통일교육의 대상은 학교 통일교육과 달리 연령적, 성향적 다양성을 지닌다. 학습자들은 교사, 공무원, 군인에서부터 일반 사기업의 직장인이나 주부에 이르기까지 직업별 특성도 차이를 보인다.

사회 통일교육의 효율성이 확보되기 위해서는 학습자 집단의 특성에 맞는 교수 내용이나 기법 상의 변화가 필요하다. 학습자 집단의 연령별, 직능별 및 성별 가치와 사고의 정향성이나 지적 수준 등에서 차이를 나타낼 수 있기 때문이다.

한편, 사회 통일교육은 학습자의 전문성에 부응하는 특성화 교육을 병행해야 한다. 다시 말해, 특정 그룹에 대한 특정 통일분야의 교육을 강화하는 것이다. 예컨대, 교사들의 경우 북한의 교육제도, 북한 청소년의 생활상 등 학교 현장에서 실제 통일교육시 활용할 수 있는 내용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공무원이나 군인 혹은 일반 직장인의 경우도 직능별 특성에 맞는 통일교육이 이루어질 경우, 현재의 직무 수행에 도움이 되는 정보를 집중적으로 제공함으로써 학습자의 관심을 촉진시키고 교육효과를 제고할 것이다.

마. 현안 쟁점과 사례 중심의 통일문제 접근

사회 통일교육의 대상이 통일문제 전반에 관한 기본적 지식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현안 문제들을 중심으로 논의하거나 특정 사례를 중심으로 접근하는 교육 기법이 바람직하다. 현안 쟁점이나 사례 중심의 통일문제 접근은 학습자의 교육에 대한 관심을 제고시키고 교육의 지루함을 완화시키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분단국의 교류협력 및 통일 사례, 우리 역사상의 통일사례가 주는 시사점 등은 통일문제를 논의하는 데 활용할 수 있는 적합한 사례들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바. 다양한 교수·학습방법의 활용

강의식 교육은 학습자의 지식 필요 욕구와 교육자의 전문적 역량이 맞아 떨어지는 경우 가장 효율적인 지식전달 방식이 될 수 있다. 문제는 지식의 전달이 일방적 형태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학습자의 입장에서는 쉽게 집중력이 떨어질 수 있다는 점이다.

강의식 방법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학습자들을 능동적으로 교육에 참여시키는 교육 기법이 가미될 필요가 있다.

최근 통일교육에서 많이 활용되는 지도 기법들은 다음과 같다.

첫째, 에듀테인먼트(Edutainment)형 통일교육으로서 여기에는 게임, 퍼즐 풀이, 퀴즈 등이 포함된다.

둘째, 과제분담학습(Jigsaw), 보상중심 협동학습(Teams Games Tournaments), PMR(Plus Minus Reconstruction), 이슈중심 접근법, 프로젝트수업, 신문활용교육(NIE : Newspaper in Education), 이야기 구연(Story-telling), 마인드맵(Mind map), 딜레마 토론 등을 포함하는 구성주의적 통일교육이다.

셋째, 영화, 드라마, 예술 다큐멘터리 등 시청각 매체를 활용하는 통일교육 방법이다.

넷째, 북한 품물, 인문지리 등의 가상체험을 활용하는 통일교육 방법이다.

다섯째, 통일관 견학, 남북출입사무소 견학 등 현장체험학습을 활용하는 통일교육이다.

여섯째, 북한이탈주민의 초청강연이나 대담은 북한의 실상을 이해하는 데

현실감을 부여하는 통일교육이 될 수 있다. 북한이탈주민을 통일교육에 초청하고자 할 경우에는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02-591-3822)에 문의하면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일곱째, 세미나 혹은 워크숍 등을 통한 통일교육도 강의식 교육의 단조로움을 회피할 수 있다.

여덟째, 최근 각광을 받고 있는 통일교육방법으로 ICT(Information Communication Technology) 활용 통일교육이 있다.

여기에는 웹 자료, VOD, CD 등을 활용한 통일관련 정보 안내하기, 웹서핑, 웹도우미를 활용한 북한 및 통일문제 관련 정보검색·분석하기, 웹토론을 통한 통일문제 관련 국민적 합의능력 증대하기, 웹게시판을 활용한 통일관련 경험 공유하기, 웹출판을 활용한 통일신문 만들기, 컴퓨터 시뮬레이션을 활용한 생활문화 체험하기, 플래쉬 또는 동영상을 활용하는 통일교육 등이 포함된다.

한편, 지역 주민들이 함께 할 수 있는 지역행사 등을 통일축제로 구성하는 경우 주민들이 자연스럽게 통일문제를 인식하고 통일에 대한 의지를 확인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행사의 경우 가족 단위로 참석이 가능하여 통일에 대한 세대간, 성별 견해 등이 자유롭게 교환될 수 있는 장점을 보유한다.





II

통일교육의 내용체계

1. 통일 문제의 이해
2. 북한 이해
3. 통일 환경의 이해
4. 통일 정책
5. 통일을 위한 과제

1. 통일 문제의 이해

가. 통일 문제의 성격

통일 문제는 민족 내부 문제인 동시에 국제 문제이다.

한반도는 제2차 세계 대전의 종식과 함께 미·소의 한반도 분할 점령으로 인해 양분되었다. 이후 북한의 도발에 의한 6·25 전쟁으로 남북한 간에는 상호 증오심과 적개심이 깊어졌으며, 분단이 장기화되면서 남북한 간의 심리적 분단도 고착화되었다.

한반도는 지정학적 위치로 인해 주변국들의 이해관계가 충돌하는 동북아의 국제 정치적 요충지가 되어 왔고 한반도의 통일 문제에도 이들 주변국들의 이해 관계가 깊게 얽혀 있다. 따라서 한반도 통일 문제는 우리 민족 내부의 문제인 동시에 국제적 문제라는 이중적 특성을 갖게 된다.

남북한 당사자의 노력과 주변국들의 이해와 협력을 필요로 한다.

한반도 통일 문제의 이중적 특성을 감안할 때 통일을 이루기 위해서는 남북한 당사자 간의 노력뿐만 아니라, 미국을 비롯한 중국, 일본, 러시아 등 한반도 주변국들의 지지와 협력을 필요로 한다.

주변국들은 한반도의 통일을 자국의 국익이라는 관점에서 판단할 수도 있기 때문에 한반도 통일에 대한 우리의 입장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다. 따라서 우리는 한반도의 통일은 역사적 당위성을 지니며 주변국들의 이익과도 부합할 수 있음을 대외적으로 설득해 나감으로써 우리의 통일 노력에 대한 이들 주변국의 지원과 협력을 확보하여야 한다.

독일 통일의 경우도 통일에 대해 상이한 입장을 가졌던 주변국들의 지지를 이끌어냄으로써 가능했다.

○ 이 주제를 다룰 때의 지도방향 ○

통일 문제의 이중성을 이해시킴으로써 통일이 우리 민족의 결집된 노력과 함께 주변국들의 지지와 협력을 통해 가능함을 인식시킨다.

나. 분단의 배경

통일을 왜 이루어야 하고 어떻게 이를 것인지를 논의하려면, 먼저 현재의 남북 분단이 어떻게 이루어졌고 그 성격은 무엇인지 살펴보아야 한다.

일본의 식민 통치와 뒤이은 미·소의 한반도 분할 점령으로 분단이 시작되었다.

남북 분단의 기원은 서구 열강의 세계 분할 지배와 일본 제국주의의 한반도 식민 통치로 거슬러 올라간다.

이후 일본이 제2차 세계대전에서 패하면서 1945년 8월 15일 연합군 측에 무조건 항복을 선언하자 미국과 소련은 일본군의 무장 해제를 위해 한반도를 분할 점령하였다. 북위 38도 선을 경계로 분할된 한반도에서는 미·소간의 이념적 대립과 갈등이 표출되면서 분단이 시작되었다.

1945년 12월 모스크바 3상 회의에서 미국·영국·소련이 한반도 신탁 통치를 결의하자, 자유주의 진영과 공산주의 진영은 신탁통치에 대한 찬반 여부를 갈려 상호 대립하게 되었고, 이는 한반도에 임시민주주의정부 수립을 지원하기 위하여 설립된 미·소공동위원회가 결렬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이에 유엔이 활동 가능한 남쪽 지역에서 총선거를 결의함에 따라 1948년 5월 10일 남쪽 지역에서 총선거를 실시하여 1948년 8월 15일 대한민국을 수립하였다. 1948년 12월, 유엔은 대한민국 정부를 한반도 내의 유일합법정부로 승인함으로써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인정하였다.

한편 이 시기에 북한은 이미 중앙정부 격인 북조선임시인민위원회(1946. 2)와 입법기관인 북조선인민회의(1947. 2)를 차례로 설치하고, 헌법 초안 작

성 등 독자 정권 수립을 위한 제반 준비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가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되자 1948년 9월 9일 북한 정권을 출범시켰다.

6·25전쟁으로 분단이 고착화되었다.

1950년 6월 25일 북한은 38도 선 전 지역에 걸쳐 기습적 남침을 감행하였다. 6·25 전쟁은 수많은 인명과 재산의 피해를 가져왔다. 이는 민족 구성원 상호간의 적대감을 심화시키는 심리적 분단으로 이어져 한반도 분단을 장기화시키는 가장 큰 원인이 되었다.

○ 이 주제를 다룰 때의 지도방향 ○

분단의 배경과 과정을 설명하면서 대한민국 건국의 정통성을 인식시킨다.

다. 분단의 폐해

분단은 개인적 차원에서 정신적·물질적 희생과 고통을 수반하기도 하고, 민족적 차원에서 민족의 역량을 낭비하고 번영을 저해하는 요인이 되기도 한다.

분단은 남북한 간 대결구도를 지속시킴으로써 다양한 유형 및 무형의 비용을 발생시켜왔다.

분단 상황은 남북한 사이에 소모적인 군비 경쟁과 체제 경쟁을 유발하고 전쟁 발발의 위험성을 내재한 군사적 대립을 존속시켰다. 이 같은 대립과 전쟁의 위험성은 다양한 경제적 부대 비용을 초래하면서 남북한의 경제 발전 추동력을 제약하였다.

아울러 분단 상황은 수많은 이산가족들과 납북 억류자, 국군 포로 가족들에게 혈육과 이별한 채 살아야 하는 고통을 안겨 주었다.

또한 남북한의 적대적 대결 구도는 한반도뿐만 아니라 동북아 지역의 안정과 평화를 위협하는 요인이 되고 있다.

분단은 대륙으로 통하는 통로를 단절함으로써 대륙과 해양의 연결을 통해 얻을 수 있는 발전 기회를 박탈해 왔다.

한반도는 대륙과 해양을 연결하는 길목임에도 불구하고 분단으로 인해 대륙과의 육로 통행이 차단됨으로써 사회·문화·경제적 발전이 저해되고 있다.

○ 이 주제를 다룰 때의 지도방향 ○

분단의 장기화가 개인의 삶과 민족 전체의 발전에 미치고 있는 부정적 영향과 폐해가 무엇인지를 구체적으로 일깨워 준다.

라. 통일의 필요성

통일은 분단으로 굴절된 역사를 바로잡고, 민족의 역량을 극대화하는 조화로운 민족 공동체를 구현시킨다.

우리 민족은 오랜 역사와 전통 속에서 조화로운 민족 공동체를 구성하기 위해 노력해왔다. 지난 60여 년에 걸친 남북분단은 민족 구성원간 상호 불신, 반목과 갈등을 부추기며 민족통합을 저해하는 주된 요인이 되어 왔다.

통일 국가의 실현은 우리 민족의 총체적 역량을 결집시켜 민족의 발전과 번영을 위한 동력을 제공할 것이다.

통일은 남북 이산가족의 고통을 해소한다.

분단의 가장 직접적인 피해자는 이산가족들이다. 오랫동안 왕래가 끊긴 채 고통 받고 있는 이산가족들이 자유롭게 만나고 함께 살 수 있는 기회를 갖게 하는 것은 인도적 차원에서뿐만 아니라 기본적 권리 실현 차원에서 중요하다.

통일은 구성원 개개인이 보다 풍요로운 삶을 향유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준다.

통일은 사회 구성원 개개인이 거주, 여행, 결혼, 직업 등 삶의 다양한 분야에서 더 넓은 선택의 기회와 보다 자유롭고 풍요로운 삶을 누릴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이는 통일이 남북 구성원 모두에게 자유롭고 평화로운 삶을 보장하여 자유와 복지, 인간의 존엄과 가치 존중이라는 혜택을 누릴 수 있게 하기 때문이다.

통일은 새로운 성장 동력을 창출하고 한반도를 동북아 번영의 중심 국가로 이끈다.

통일은 한반도의 단일 경제권 형성에 따른 규모의 경제 실현과 남한의 기술·자본과 북한의 천연자원·노동력의 결합에 따른 시너지 효과 등을 통해 비약적 경제발전을 이루게 할 것이다.

나아가 통일은 남북의 생활 공간을 하나로 만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의 공간을 대륙으로 확장시키는 효과를 가져온다.

통일 한국은 유라시아 대륙과 태평양을 연결하는 무역과 교통의 요충지로서 동북아 국가들의 경제권 형성과 역내 교류·협력을 가속화하게 될 것이다.

통일 후 독일이 유럽의 중심 국가로서의 위상을 확보하고 유럽 통합을 가속화시켜 이를 계기로 유럽 각국의 경제적 시너지 효과를 달성한 것에서 알 수 있듯이, 통일한국은 세계 경제의 중심지로서 동북아 지역의 공동발전을 선도할 국제적 위상을 확보하게 할 것이다.

통일은 한반도에서의 전쟁위험 제거와 평화정착을 통해 동북아와 세계 평화에 기여한다.

북한의 핵 개발과 전쟁의 위험이 완전히 가시지 않은 한반도의 불안한 정세는 동북아 지역의 평화와 안정을 저해되는 요소로 작용해 왔다.

통일은 한반도에서의 전쟁 위험을 제거하고 평화를 정착하여 동북아 지역은 물론이고 세계평화에 기여할 것이다.

○ 이 주제를 다룰 때의 지도방향 ○

분단의 폐해를 환기시키고 통일의 필요성을 당위적·실리적·인도적 차원에서, 그리고 개인적·국가적·국제적 차원에서 종합적으로 인식하도록 한다.

특히, 통일을 통해 얻게 될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편익이 무엇인지를 다양한 사례와 근거를 들어 설명한다.

독일통일, 유럽통합 등의 사례를 통해 세계적 차원의 통합 흐름과 그 긍정적 측면을 강조한다.

마. 통일 비용과 편익

국민들은 통일의 필요성과 당위성에 대해서는 대체로 긍정적이거나 통일의 혜택보다는 비용이 더 클 것이라는 우려로 통일에 소극적인 경향을 보이기도 한다. 따라서 통일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통일 비용과 편익에 대해 올바르게 이해해야 한다.

통일 비용은 소모적 비용이 아니라 투자 비용이다.

통일은 상이한 체제와 제도 그리고 이질적인 주민의 삶을 통합하는 과정으로서, 여기에는 일정한 비용이 든다.

그러나 통일에 드는 비용은 사용하면 없어져 버리는 소모적 비용이 아니라 도로를 건설하고 공장을 건설하는 것과 같이 미래 이익을 창출하기 위한 투자성 비용이다.

통일에 따른 비용은 북한 지역을 재건하는 데 필요한 투자이며, 이는 남북한이 각각 보유한 자원의 연계·결합을 통해 시너지 효과를 창출한다는 점에서 우리의 청소년들에게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편익과 새로운 삶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비용으로 이해될 수 있다.

통일 비용이 분단 비용보다 적다.

분단 비용은 남북이 분단되어있는 동안 끊임없이 지불해야 하는 기회 비용

으로, 대표적으로 방위비나 체제경쟁을 위한 외교비 등을 들 수 있으며, 우리 사회 내부의 이념 갈등이나 북한의 도발에 의한 국민의 생명·재산 피해 등도 이에 포함된다.

이러한 분단 비용은 통일에 이르는 기간이 길어질수록 크기가 커지는 지속적인 성격이 있는 반면, 통일 비용은 통일 전후 시점에서 단기간에 발생하는 일시적 속성을 가지고 있으므로, 통일 비용은 분단 비용보다 적다고 할 수 있다.

통일 편익이 통일 비용보다 많다.

통일은 통일 비용만 초래하는 것이 아니라 이를 상쇄하고도 남을 정도의 통일 편익을 가져온다. 통일되는 순간부터 분단 비용의 해소라는 통일 편익이 발생하며, 나아가 남북한 체제 통합에 따른 유·무형의 이익이 사회 각 분야에서 발생하게 된다.

이러한 통일 편익은 통일 이후 지속적으로 얻게 되어 사실상 무한대라고 할 수 있으므로 한시적으로 발생하는 통일 비용보다 크다고 할 수 있다.

요컨대, 통일 비용이 더 큰 통일 편익을 가져오기 위한 투자라는 점과 통일을 준비함으로써 통일 비용을 줄일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통일 비용이 이유로 통일을 지연하거나 회피하자고 하는 것은 논리적으로 옳지 않은 주장임을 알 수 있다.

통일 비용과 편익 문제는 어떻게 하면 초기의 비용 부담을 줄이면서 편익을 극대화할 것인가 하는 관점에서 접근해야 한다.

○ 이 주제를 다룰 때의 지도방향 ○

통일 비용에 대해서는 통일 편익과 분단 비용 간의 관계 속에서 종합적으로 인식하게 함으로써 일부에서 무분별하게 제기되고 있는 통일 비용에 대한 잘못된 인식을 바로잡아 준다.

바. 통일의 접근 방식

통일은 남북 간 대화와 협상 등 평화적 방식을 통해 이루어야 한다.

통일은 전쟁 등 무력 사용에 의존하지 않고 남북 간 신뢰와 합의를 바탕으로 평화적으로 추진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먼저 한반도에서 전쟁 재발을 방지하고 북한의 군사적 위협으로부터 국민과 국가의 안전을 확보할 수 있는 안보 역량을 구축할 필요가 있다.

우리가 추구하는 평화적 통일을 이끌어내기 위해서는 상호 신뢰와 화해·협력의 정신에 따라 경제·사회·문화뿐만 아니라 정치·군사·외교 등 다양한 분야에서 남북 관계를 개선하는 노력이 이루어져야 한다.

통일은 점진적이고 단계적인 방식으로 이루어야 한다.

오랜 분단에서 비롯된 남북한의 이질성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꾸준하고 체계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남북이 서로 상대방의 체제를 인정하고 다양한 차원에서 교류·협력을 확대해 나가는 과정이 바람직하다.

남북한 체제의 차이, 경제적 격차, 문화적 이질성 등을 극복하면서 통일 기반을 착실히 다져야 통일이 순조롭게 달성될 수 있기 때문이다.

남북한이 점진적·단계적으로 통일을 추구해 갈 때 공존공영을 위한 민족공동체는 자연스럽게 형성될 것이다.

통일준비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에 기반을 두어야 한다.

통일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인식을 가지고 통일을 준비해야 한다. 통일 과정은 복잡하고 장기적이며 불확실성이 존재하기 때문에 준비가 빠를수록 통일 비용을 줄일 수 있다.

바람직한 통일의 방향은 무엇인지, 통일이 가져올 효용과 편익은 무엇인지, 여기에 투입될 자원 규모와 조달 방안은 무엇인지, 그리고 국민 부담을 최소

화하는 방안은 무엇인지 등에 대한 논의와 준비가 필요하다.

통일을 지금부터 꾸준히 준비한다면 우리가 충분히 감당할 수 있는 통일이 될 것이라는 점을 국민들에게 널리 알리고 이를 기반으로 통일을 달성해야 한다.

○ 이 주제를 다룰 때의 지도방향 ○

평화적이고 점진적인 통일이 합리적이고 바람직한 방안임을 이해시킨다.

통일환경의 가변성과 통일과정의 불확실성을 감안할 때 현실적 통일 준비 노력이 필요함을 인식시킨다.

사. 통일 국가의 미래상

통일 한국은 미래지향적 민족 공동체의 형성·발전을 의미한다.

통일은 분단 이전의 상태로 회귀하는 것이 아니라 분단 후 반세기 이상 이질화된 남북한 두 체제 구성원들의 동질성을 회복하고 훼손된 민족 정체성을 새롭게 정립하여 하나의 새로운 민족 공동체로 발전해 가는 창조적인 과정이다.

통일은 오랫동안 하나의 민족 국가를 이루고 살아왔던 우리의 역사를 복원한다는 의미에서 역사적 정통성을 회복하는 것이다.

더불어 세계화, 다문화 시대로 인해 민족의 개념이 확대되어 가는 현재, 남북한 주민뿐 아니라 우리 사회 안에 타민족 구성원 모두와 하나의 공동체를 이루어 나아가기 위한 노력도 중요하다.

우리가 만들어 가야 하는 민족 공동체는 다른 민족을 배척하는 닫힌 민족주의가 아니라 인류의 보편적 가치를 실현하는 열린 민족주의를 지향해야 하는 것이다.

통일한국은 민족구성원 모두에게 자유·복지·인간 존엄성을 보장하는 자유 민주 복지국가를 구현한다.

통일 한국은 구성원들의 자율성과 창의가 존중되며 자유 민주주의와 시장 경제에 바탕을 두는 사회이어야 한다. 또한 민족의 총체적 역량이 발현된 선진 경제를 기반으로 풍요의 혜택이 구성원 모두에게 골고루 돌아가고 인간의 존엄성이 존중되는 복지 국가이어야 한다

통일 한국의 구성원들은 활동 영역의 확대와 폭넓은 선택의 기회를 향유한다.

통일 한국은 국가·사회적 차원에서 전쟁 위협 소멸에 따른 군사비 감소, 자연 자원과 인적 자원의 상호 보완적 활용 등이 가능하며, 경제적으로 비약적 발전을 기약할 수 있는 잠재력을 지닌 국가로서 국제적 위상이 고양될 것이다.

또한, 통일 한국의 구성원 개개인은 보다 개방된 공간을 배경으로 거주, 여행, 결혼, 직업 등 삶의 다양한 분야에서 선택의 기회가 넓어지고 보다 자유롭고 풍요로운 삶을 누리게 될 것이다.

통일 한국은 세계 평화와 인류 공영에 이바지하는 선진 일류 국가를 지향한다.

통일은 아시아 및 유럽 대륙으로 뻗어나가는 열린 공간의 시대를 한민족에게 제공할 것이므로 통일한국은 21세기의 동북아 시대를 선도하며 세계 평화와 인류 공영에 기여하는 중심 국가가 될 것이다.

○ 이 주제를 다룰 때의 지도방향 ○

통일국가의 미래 모습을 제시함으로써 통일이 남북한 주민의 삶에 어떤 변화를 초래하는지를 생각하게 한다.

통일이 우리 사회에 미치는 긍정적 영향을 설명하고 선진일류국가로 도약하는 계기가 될 수 있음을 인식시킨다.

2. 북한 이해

분단을 해소하고 통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북한에 대한 올바른 인식과 이해가 필요하다. 즉, 북한의 정치·경제·사회·문화 등 여러 분야의 실상에 대해 정확한 정보를 토대로 사실 그대로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

가. 북한에 대한 인식

북한은 통일을 위한 화해·협력의 상대임과 동시에 안보를 위협하는 경계의 대상이다.

분단이 해소되기 전까지 북한은 대화와 교류·협력의 상대이자 한반도 평화체제가 정착되기 전까지 우리의 안보를 위협하는 경계의 대상이라는 사실을 인식해야 한다.

북한을 화해협력의 상대로만 인식한다면 휴전선을 사이에 두고 군사적 대치 하에 놓여 있는 엄연한 현실을 도외시할 우려가 있고, 북한을 경계의 대상으로만 볼 경우 남북한 간의 적대 관계를 해소하기 어렵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러한 이중적인 측면을 인식하는 가운데 미래 지향적인 남북 관계를 발전시켜 나가면서 통일역량을 강화하는 지혜와 노력이 중요하다.

북한의 이중적 행태를 정확히 인식해야 한다.

그동안 북한은 군사적 위협·도발과 대화·협력 제의를 반복하는 행태를 보여 왔다.

특히 2010년에는 연평도 포격 도발 등으로 한반도의 긴장을 고조시킨 데 이어, 잘못에 대해 어떠한 책임 있는 조치도 취하지 않으면서 우리 측에 대화 공세를 취하였다.

이와 같이 이중적 행태를 보이고 있는 북한 실체를 우리는 정확히 인식할

필요가 있고, 이를 바탕으로 진정성 있는 북한의 태도변화를 이끌어 나가면서 한반도 평화 정착과 통일을 이루어 나가야 한다.

북한 실상에 대한 사실 그대로의 인식이 필요하다.

북한을 올바르게 인식하기 위해서는 객관적 현실에 기초해서 사실 그대로 북한을 바라보아야 한다. 어느 한 편의 극단적 시각으로 볼 경우 북한 실상을 왜곡할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북한의 실상은 단순히 드러난 현상만으로는 제대로 파악하기 어렵다. 그러한 현상을 초래한 체제적 요인을 이해할 때 비로소 북한에 대한 실상을 제대로 파악할 수 있기 때문이다. 북한의 실상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정확한 자료와 정보에 바탕을 두고 종합적으로 살펴보아야 한다.

○ 이 주제를 다룰 때의 지도방향 ○

북한이 통일을 이루는 과정에서 협력의 상대이자 안보를 위협하는 경계의 대상이라는 이중적인 성격을 이해시킨다.

북한의 이중적 행태를 설명하고, 남북 관계의 실질적 진전과 평화 통일을 위해서는 북한의 진정성 있는 변화가 무엇보다 중요함을 강조한다.

북한의 체제선전·주장과 실제 모습과의 차이점, 북한 사회내부의 주민 변화 흐름 등을 정확한 자료와 정보를 바탕으로 구체적 사례를 들어 지도한다.

나. 북한의 정치와 외교

1) 북한의 통치 이념과 정치 체제

북한은 1인 절대 권력자를 중심으로 전 사회가 일원적으로 편제된 유일 지배 체제이다.

북한은 모든 주민과 정치 조직 및 기구가 절대 권력자를 중심으로 움직이

며, 유일 지배 이념을 통해 1인 지배를 정당화한다. 또한 지도자에 대한 우상화와 개인숭배를 통해 주민들로 하여금 지도자에게 무조건 충성하고, 주어진 현실을 무비판적으로 수용하게 한다.

이러한 점은 북한 사회의 폐쇄성과 경직성을 초래함으로써 외부 환경의 변화에 대한 대응력을 약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북한은 ‘수령 중심의 당-국가체제’를 토대로, 군을 앞세운 선군정치(先軍政治) 체제로 운영되고 있다.

북한의 정치 체제는 김일성-김정일의 절대 권력과 이들의 혁명 사상에 의해 지배되는 통치 체제인 동시에 집단적 소유와 계획 경제, 당-국가의 지배 체제를 근간으로 하는 공산주의 체제의 기본적 특성을 공유하고 있다.

당-국가 체제에서 당은 국가 권력의 원천으로 최고의 위상과 권한을 지니고 다른 국가 기관보다 상위에 위치하며, 모든 국가 정책들은 당의 지도와 통제 하에서 추진된다.

당-국가 체제는 1990년대 중반 김일성의 사망과 극심한 경제난, 대외 고립 등의 위기 상황에서 군 중심의 위기 관리 체제로 변화되었다. 이후 북한은 군대를 내세운 선군 정치를 운영하면서 체제의 균열과 붕괴를 막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북한에 있어서 선군정치는 군이 당보다 권력 우위에 있다기보다는 군대가 노동 계급을 대신해 혁명과 건설의 주력군으로서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을 의미한다.

북한은 선군 정치를 통해 군대에 체제 보위에 대한 사명감을 지니게 하고, 군대 문화를 사회 전 분야로 확산시켜 군사주의적 사회를 조성하려고 하였다. 그러나, 북한에서 선군은 정작 군림의 수단이 되어 군대의 부패와 주민 착취의 원인이 되고 있다.

한편, 북한은 2009년 4월 헌법을 개정하면서 선군 사상이 주체사상과 더불어 지도적 지침을 행사한다고 규정하였고, 2010년 9월 개최된 제3차 당 대표자회를 통해 김정일의 아들 김정은을 후계자로 부각시키는 등 사실상 3대 세

습을 공식화하였다. 김일성-김정일-김정은으로 이어지는 3대 세습은 현대 세계정치사에서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퇴행적인 행위이다.

○ 이 주제를 다룰 때의 지도방향 ○

북한 정치체제는 당-국가 지배체제를 근간으로 하는 공산주의 체제의 특성과 함께 권력 세습을 바탕으로 한 퇴행적인 체제 특이성도 갖고 있음을 이해시킨다.
김정일 집권 이후 선군정치를 앞세워 주민통제와 체제운명을 하고 있는 실상을 규명하도록 한다.

2) 북한의 대외정책

북한은 핵과 미사일 등 대량 살상 무기를 개발하고 이를 활용하여 국제 사회로부터 체제 보장과 경제적 지원을 얻어내려는 전략을 구사하고 있다.

북한은 강성대국 건설을 목표로 내세우고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체제 유지에 부심하고 있다.

북한은 핵과 미사일 같은 대량 살상 무기 개발에 주력하면서 미국과 갈등을 야기하고, 이를 매개로 체제 보장과 경제적 지원을 동시에 얻어내려는 협상 전략을 구사하고 있다.

그러나 북한의 이러한 전략은 국제 사회와 한반도에서 군사적 긴장을 야기하였을 뿐 아니라 북한의 국제적 고립을 심화시켜 왔다.

북한은 중국, 러시아와 우호관계 증진을 통해 국제 사회의 압박을 견제하고 있으나 이러한 북한의 전략은 한계에 직면하고 있다.

북한은 전통 우방국, 특히 중국과의 외교 관계 강화를 통해 국제 사회의 비난과 미국의 압박 정책을 견제하려는 전략을 추진하고 있다.

중국과 고위급 인사의 상호 방문 등을 통해 북한은 경제적 지원을 비롯한

다방면에 걸친 실리를 확보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천안함 폭침 사건 이후인 2010년 5월과 8월 두 차례에 걸친 김정일의 중국 방문은 이를 상징적으로 말해 주고 있다.

그러나 냉전 시대와 달리 오늘날 미국의 중국·러시아 관계는 갈등보다는 상호 이익을 도모하는 협력적 관계로 발전하고 있다.

더욱이 중국과 러시아는 북한의 2차 핵실험(2009.5.25)에 대한 유엔 안보리의 대북 제재 결의안에 찬성하였다. 이는 북한의 외교 전략이 한계에 직면하고 있음을 의미한다고 하겠다.

○ 이 주제를 다룰 때의 지도방향 ○

북한이 핵과 미사일을 개발하는 등 공세적인 대외전략을 구사하고 있다는 것을 설명한다.

북한이 직면하고 있는 대외관계의 현실과 북한의 외교전략을 설명한 후 그것이 통일 문제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를 생각하게 한다.

다. 북한의 군사 및 핵개발

북한은 악화된 경제 사정에도 불구하고 군사력을 지속적으로 증강시키고 있다.

북한의 군은 노동당의 혁명 무력으로서 사회주의 강성 대국 건설이라는 강령 아래 국방과 경제 건설을 담당하는 중요한 위치에 있다.

북한은 현재 119만 명의 정규군과 함께 인구의 약 30%를 예비 병력으로 보유하는 등 인구 대비 병력 보유율이 세계 최고를 기록하고 있다.

북한은 국가 경제력의 상당 부분을 군사비로 할애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또한 휴전 이후 무기의 자급자족을 위해 많은 군수 공장을 건설하는 등 군수 산업의 발전에 치중해 왔다.

그 결과 일부 정밀 유도무기, 고도의 항공 장비를 제외하고는 대부분의 무기를 자체 생산할 수 있는 능력을 보유하고 있다. 이와 함께 북한은 장거리 포, 생화학 무기, 미사일 등 각종 대량 살상 무기를 개발·배치하는 등 무력 증강을 꾀하고 있다.

북한의 이러한 무력 증강 움직임은 대남 군사 우위 및 대외 협상에서 유리한 입지를 확보할 뿐 아니라 필요시 이를 사용하여 대남 전략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시도로 볼 수 있다.

이를 위해 북한은 악화된 경제 사정에도 불구하고 무기를 지속적으로 개발해 왔고, 군사 훈련과 군수품 보급 및 장비 현대화를 위한 노력도 지속하고 있다.

북한은 핵개발을 통해 한반도 및 세계 평화를 위협하고 있다.

북한은 소련 등에서 교육받은 핵개발 전문 인력과 풍부한 우라늄 자원을 바탕으로 1980년대 들어 영변에 원자로를 가동하는 등 핵 개발에 박차를 가하였다. 1990년대에는 핵연료 확보에서 핵 폐기물 재처리에 이르는 일련의 기술을 확보하는 데 주력하였다.

그동안 미국을 비롯한 국제 사회는 북한 핵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1994년 북한과 제네바 합의를 체결하였고 2003년부터는 6자회담을 개최하였다. 6자회담에서는 2005년의 9·19 공동 성명에 이어 2007년의 2·13 합의 및 10·3 합의 등을 도출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북한은 미국을 비롯한 국제 사회와의 협상과 합의 이행 과정 중에도 핵확산금지조약(NPT) 가입과 탈퇴를 반복하며 북핵 위기를 조성하였다. 또한 제네바 합의와 9·19 공동성명 등 한반도 비핵화를 위한 국제 사회와의 약속을 파기하면서 핵 개발을 지속하였다.

마침내 2006년과 2009년에는 핵 실험을 실시하며 한반도와 세계 평화를 위협하고 있다.

○ 이 주제를 다룰 때의 지도방향 ○

북한은 재래식 무기, 대량살상무기의 개발 등 상당한 군사력을 보유하고 있으며, 최근의 군사도발에서 보듯이 우리에게 심각한 안보위협 요인이 되고 있음을 강조한다.

라. 북한의 경제

북한의 사회주의 계획 경제는 사회주의권의 붕괴 이후 심각한 경제난에 빠져 있다.

북한은 중앙집권적 계획경제체제를 1960년대 초반에 완료하고, 중앙의 계획당국이 국영기업소, 협동농장, 기관 등에 생산지표와 경영지표를 하달하는 경제체제를 유지해 왔다.

그러나 북한의 사회주의 계획 경제는 개인의 자율과 창의를 부정하는 계획 경제 자체의 비효율성 문제 등으로 인하여 만성적인 결핍 상태를 벗어나지 못했다. 북한 당국은 이러한 문제를 대중 동원과 대외 원조 등을 통해 해결하려 했지만 이는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없었다.

특히, 사회주의권의 붕괴로 대외 지원에 의존하던 원유 등 필수 원자재의 수급상황에 결정적인 불균형이 초래되어 산업 가동 자체가 어려워졌다. 1990년대 중반에는 북한의 전반적인 산업 가동률이 20% 이하로 내려가는 상황에 이르렀다.

여기에 홍수·가뭄 등의 자연재해가 연속적으로 발생하여 식량생산에 결정적인 타격을 입었다.

북한의 계획경제는 중앙 집권적 계획 경제 시스템 유지에 필요한 원자재 공급 시스템과 배급제 시스템의 기능이 마비되면서 사실상 와해되었다. 북한 경제는 1990년대에 지속적으로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하고, 식량난, 에너지난, 생필품난, 외화난 등 경제난이 일상적인 현상이 되었다.

북한은 경제 정책으로 소위 ‘선군 경제 건설 노선’을 추구하고 있다.

북한은 경제난이 심화되고 계획 경제 체제가 마비되자 이를 타개하기 위하여 1990년대 말부터 국가가 가지고 있는 모든 재원을 국방공업 및 이와 연관된 기간 산업에 집중 투자하는 선군 경제 건설 노선을 기본 경제 정책 노선으로 채택하고 있다.

아울러 2002년에는 자생적으로 발달한 시장 경제를 부분 활용하여 경제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하는 7·1 ‘경제관리개선조치’를 시행하였다.

이는 체제 유지와 경제 회복을 동시에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사회주의 원칙을 지키면서 경제활동의 성과에 있어서는 최대의 실리를 추구하는 실리 사회주의 노선에 따른 것이다.

7·1 조치는 일부 경제 현장에 생산성 증대를 가져오고 주민들의 소비 경제를 활성화시키기도 했지만, 시장이 전국적 범위로 확산되고 계획 경제가 오히려 시장에 의존하는 현상이 나타나는 등 체제 위협 요소도 증가시켰다.

이를 우려한 북한은 2005년 말부터 지속적으로 시장경제 요소의 확산을 막기 위한 정책을 강화해 오다, 2009년 11월에는 중앙집중적 계획 경제 시스템의 전면 복원과 시장의 철폐를 의도하는 화폐 개혁을 시행하였다.

그러나 화폐 개혁은 시행되자마자 북한 경제를 심각한 혼란에 빠뜨려서 2010년 2월 이후에는 다시 외화 거래 및 시장 완화 조치를 취하였다.

북한은 자력갱생을 강조하면서 제한적인 대외 개방을 시도하고 있다.

북한은 사회주의권이 붕괴하고 자본주의 시장 경제와의 경제 관계 구축이 불가피해지자 제한적으로 대외 개방을 추진해 왔다.

2002년에는 신의주특별행정구기본법, 개성공업지구법, 금강산관광지구법 등을 제정하여 경제특구의 확대를 시도했다. 그러나 신의주 특구는 중국과의 갈등 때문에 추진되지 못하고, 대한민국 자본과 기술이 투입된 개성공업지구와 금강산관광지구만이 설치되었다. 금강산 관광은 2008년 남한 관광객 피격이라는 북한의 도발행위 때문에 중단되어 있는 상태이다.

북한은 2009년 2차 핵실험 이후 유엔 1874호 대북 제재까지 받음으로써 해외자본 유치가 더욱 어려워지자 대풍국제투자그룹과 국가개발은행을 설립하고, 나선시를 특별시로 지정하는 등 주로 중국자본을 유치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북핵문제 및 이로 인한 국제 사회의 대북 제재가 지속되는 한 국제 사회의 대규모 투자가 실제로 이루어지기는 어려울 것이다.

더욱이 2010년 4월 금강산 지역의 우리 측 자산을 몰수하는 등 사업자 간에 정상적으로 맺은 계약과 합의를 일방적으로 부인함으로써 대북 투자 여건은 더욱 악화되고 있다고 하겠다.

북한이 지금의 경제적 어려움에서 벗어나서 경제발전을 이루기 위해서는 핵문제의 해결과 적극적인 개혁·개방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

○ 이 주제를 다룰 때의 지도방향 ○

북한 경제가 만성적인 경제난에 처하게 된 이유를 다각적으로 설명한다.

북한의 체제유지를 우선시한 경제개혁 및 대외개방 조치의 한계를 이해시킨다.

마. 북한의 사회·문화

1) 북한 주민의 가치관과 생활

북한 주민의 규범적 가치관은 집단주의이다.

북한은 사회주의 체제로서 토지·자본·공장 등 주요 생산수단을 국유화, 집단화해 왔으며, 외형상으로는 주민들에 대해 평등주의적 가치관을 강조해 왔다. 또한, 헌법에 ‘하나를 전체를 위하여, 전체는 하나를 위하여’라고 규정되어 있을 정도로 북한 사회는 개인보다 집단을 우선시하는 집단주의 가치관을 강조해 왔다.

경제난 이후 시장화가 진행되면서 주민들의 의식 구조와 생활 모습도 변하고 있다.

북한 주민들은 경제난 이후 자력으로 생계를 꾸려가면서 자신과 가족의 생존을 우선시하는 가치관이 강화되고 있다. 주민들은 공장 기업소나 협동농장에서 일하는 것 외에도 장마당에서 장사를 하거나 텃밭에서 농사를 짓는 등 개인적 이익을 추구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또한, 점차 사회주의에 대한 신념이 약화되면서 집단주의적 가치관보다는 물질 중심의 개인주의적 풍조가 확산되고 있다.

특히, 2002년 7월 1일 ‘경제관리개선조치’ 이후에는 전국적 규모의 시장 유통망이 형성되었다. 시장이 확대되어감에 따라 북한 주민들은 국가의 배급에 의존했던 방식에서 탈피하여, 시장에 점차 적응을 해가게 되었고 자신의 노력 여하에 따라 생활수준을 어느 정도 향상시킬 수 있게 되었다.

그 과정에서 변화된 경제 환경에 적응하지 못한 하층 주민들은 7·1 조치 이전보다 생활이 악화되면서 빈부의 격차가 심화되었다.

시장의 확대로 주민들의 의식과 생활 모습에도 큰 변화가 나타났다. 주민들 사이에 돈과 이익 중심의 시장 경제적 사고가 확산되고, 여성들이 시장활동을 통하여 가족의 생계를 지탱함에 따라 전통적인 가부장적 문화에도 변화가 일고 있다.

경제난 이후 생계유지를 위한 유동 인구가 증가하고 정보 소통이 활발해지면서 북한 주민의 대남 인식도 점차 바뀌고 있다.

북한 주민은 거주 이전과 통행의 자유가 보장되지 않아 여행을 하기 위해서는 당국으로부터 통행증을 발급받아야 한다. 그러나 경제난 이후 생계유지를 위한 유동 인구가 많아지면서 통행증 발급이 비교적 쉽게 이루어지고, 무허가 여행을 하는 주민도 늘어났다.

유동 인구가 증가함에 따라 정보유통이 활발해지고 대한민국 사회를 비롯한 외부세계에 대한 정보를 습득하게 되면서 북한 주민의 의식 변화가 일어

나고 있다.

1990년대 중반까지만 해도 북한 주민은 북한 당국에 의한 사상 교양 학습을 통해 대한민국 국민을 ‘혈벗고 굶주린 불쌍한 동포’ 혹은 ‘미제의 압제에 시달리는 해방의 대상’ 정도로 이해하고 있었다.

그러나 다양한 경로를 통해 중국과 한국 등 외부 실정에 대한 정보 교류가 이루어지고, 특히 시장을 통하여 한국의 상품과 영화·드라마 DVD가 음성적으로 유통되면서 북한 주민들도 대한민국의 발전상을 점차 인식하게 되었다.

○ 이 주제를 다룰 때의 지도방향 ○

북한주민의 가치관과 일상생활을 이해하고, 경제난 이후 가치관과 일상생활의 변화가 북한사회 저변의 변화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탐색해보도록 한다.

2) 북한 주민의 인권

북한 주민의 인권실태는 매우 열악하다.

북한에서는 정치범, 탈북자 가족을 포함한 다수의 주민들이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구금되거나 공개 처형되고 있다. 15만 명 이상의 북한 주민이 정치적 이유 등으로 오지의 수용소에 구금되어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이러한 수용소의 여건은 매우 열악하여 수감자들에게 상시적인 고문이 자행되고, 음식·의복 등을 거의 제공받지 못하는 경우도 있다.

북한 헌법은 언론·출판의 자유를 규정하고 있으나 북한 정권은 사실상 이러한 권리의 행사를 금지하고 있으며, 모든 정보와 출판물을 검열·통제하고 있다.

종교의 자유 또한 사실상 지켜지지 않고 있다. 일부 종교 단체가 설립된 경우도 있으나 이는 대외 선전용이지 일반 주민들의 종교 활동을 보장하는 시설은 아니다.

북한 정권은 학문과 예술의 자유를 엄격히 제한해 왔다. 영화, 연극, 서적의 주된 기능은 김정일 일가의 우상화 작업을 위한 것이다.

만성적인 식량난으로 주민의 생존권이 위협받고 있다. 북한은 식량이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가용한 자원을 핵과 미사일 개발 등 군사적 용도에 집중시키면서 식량문제를 가중시키고 있다.

국제 사회와 우리정부는 북한 주민의 인권 개선을 촉구하고 있다.

국제 사회는 북한의 인권 침해에 대해 지속적으로 시정을 촉구하고 있다. 유엔은 인권위원회(UNCHR)와 총회를 통해 2003년 이후 지속적으로 ‘북한 인권결의안’을 채택하여 왔다.

우리정부도 북한 인권 개선에 대하여 보다 적극적인 의지를 표명하였다. 2008년도 제63차 유엔총회에서 유럽연합 및 일본 등과 함께 북한인권결의안을 공동으로 제안하고, 북한인권법, 인권재단 설립 등 북한인권의 실질적 개선을 위한 제도적 장치를 준비 중에 있다.

그러나 북한 당국은 국제 사회의 인권 개선 촉구에 대해 인권의 상대성과 배타성을 주장하면서 인권 개선에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

○ 이 주제를 다룰 때의 지도방향 ○

북한 주민의 열악한 인권실태를 사례를 들어 설명하고 이의 개선을 위한 국제사회와 우리정부의 노력을 설명한다.

3) 북한의 교육과 학교생활

북한 교육은 이른바 “공산주의적 새 인간 육성”이라는 명분 아래 체제 순응적 인간형을 만드는 데 주안을 두고 있다.

북한 교육은 개인의 자아 발달보다는 김일성과 김정일 등 지도층에 절대 복종하고 집단을 위해 자신의 목숨을 던질 수 있는 인간형의 양성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러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수단으로 유치원과 초중등 단계를 포괄한 11년제의 의무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나, 경제난 이후 교재 및 학용품 구입 등 각종 명목의 잡부금에 대한 부담으로 북한의 무상 의무 교육은 선전과 달리 현실적으로 실현되지 못한 채 그 의미가 퇴색되고 있다.

북한 교육 과정의 특징은 교육과 정치의 결합, 교육과 생산·노동의 결합, 교육내용의 선택권 부재 등이다.

북한은 교육을 사상혁명의 핵심 수단으로 여기므로 학교에서도 정치사상 교육에 중점을 두고 있다.

또한, 교육과정에 노동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학생들은 다양한 유형의 노력동원에 참여해야 한다.

교육내용과 방법은 국가에 의해 규격화되어 하달되므로 개인의 선택여지가 거의 없으며, 정해진 내용과 방법으로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다.

북한의 학교 교육은 교과 수업 외에 청소년 조직 활동과 방과 후 활동으로 구성되어 있다.

청소년 조직 활동은 집단주의를 강조하는 북한체제에서 매우 중요시되고 있다. 학생들은 소학교 2학년부터 소년단, 중학교 5학년부터 김일성사회주의청년동맹에서 활동하며, 이러한 조직은 학교생활과 일상에서 학생들 스스로가 동료학생의 생활을 집단적으로 규율하고 통제하는 기능을 담당하고 있다.

방과 후에는 음악, 체육 등 소조(동아리)에서 활동하기도 하고, 학교에서 일을 하거나 농장에 나가 일손을 돕기도 한다.

경제난 이후 북한은 정치사상 교육을 강조하면서 과학 기술, 컴퓨터, 외국어 등 실용적 교육도 강화하고 있다.

북한은 경제난 이후 나타나고 있는 사상적 이완 현상을 막기 위해 정치·사상 교육을 강화하는 한편 경제 발전을 위해 과학기술 분야의 전문 인력을 양성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특히 IT 교육을 강화하기 위해 1990년대 후반부터 중학교에서 컴퓨터 교육을 정규 과목으로 개설하고 컴퓨터 수재반도 운영하고 있다.

외국어도 북한이 중요시하는 과목이다. 특히 영어의 인기가 높아 대부분의 중학교에서 영어를 외국어 과목으로 지정하고 있다.

○ 이 주제를 다룰 때의 지도방향 ○

북한의 교육목적, 교육제도, 교육내용을 설명하고, 무상교육 등 북한이 선전하는 것과 실제 현실 간의 괴리를 이해시킨다.

북한의 학교와 북한학생들의 생활을 알게 하고 우리와의 차이점과 유사점을 비교해 보도록 한다.

4) 북한의 문화

북한의 문화는 “사회주의적 민족문화 건설”이라는 명분으로 전통적 민족 문화를 변질시켜 왔다.

북한은 이른바 “사회주의적 민족문화 건설”을 위한 문화 정책을 추진하면서 획일적인 문화를 추구해왔다.

예를 들어 북한의 명절은 전통적 민족 명절보다도 김일성·김정일 생일을 민족 최대의 명절이라고 부각하고 있으며 그 외에도 정권수립일, 당 창건일, 헌법절 등 북한체제의 특색과 사회주의적 요소를 포함하고 있다.

그 결과 북한에서는 우리 민족의 고유문화 전통이 왜곡되어 사상 통제의 수단으로 전락하였으며 남북간 문화적 이질감도 심화되었다.

북한은 주민들의 사상교양 수단으로 군중문화 활동을 독려하고 있다.

군중문화 활동은 일반 군중들이 참가하여 진행되는 문화활동으로서 사상교양 수단의 일환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강연, 담화, 보고, 해설독보, 영화감상, 방송청취, 전시회 관람, 체육경기 등의 형태로 실시된다.

각급 학교나 기관과 공장, 기업소, 협동농장 등에서 활동하는 아마추어 예술인으로 구성된 '예술기동선전대'와 일반 주민들이 참여하는 '예술소조'가 있으며, 이 단체들은 주민들의 사상교양 및 노력동원 장려 활동을 주로 한다.

북한에서 개인적 여가활동은 법적으로 보장되어 있다고 하나, 실제로는 노력동원, 생활총화 등 조직 활동에 의무적으로 참여해야 하기 때문에 여가활동을 하기가 쉽지 않다.

○ 이 주제를 다룰 때의 지도방향 ○

북한의 경우 우리 고유의 문화전통이 왜곡되어 사상통제의 수단으로 전락하였으며, 그 결과 남북한 간의 문화적 이질감이 심화되었음을 이해시킨다.

통일 이후 문화통합을 위한 다양한 방안을 모색해 보고, 개인적 차원에서 어떠한 노력을 할 수 있는지 생각하게 한다.

3. 통일 환경의 이해

가. 국제 정세의 변화

오늘날 국제 질서는 새롭게 재편되고 있다.

탈냉전 이후의 새로운 국제질서는 다차원적이고 복합적으로 변화하고 있다.

정치·군사 질서는 여전히 미국이 지배하는 단극적 질서가 유지되고 있지만 경제, 산업, 금융, 사회, 문화 등에서는 중국·인도 등 신흥국의 부상으로 다극체제의 성격이 나타나고 있다.

또한, 새로운 국제질서는 군사력, 정치력과 같은 ‘전통적 안보’의 개념뿐만 아니라 경제력과 자원, 테러, 국제범죄, 기후변화와 같은 ‘비전통적 안보’의 요소들이 복합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 같은 변화는 이제 어떤 나라도 혼자 힘으로 국제문제를 해결할 수 없으며, 문제 해결을 위한 국가 간의 합의와 공조가 중요해짐을 의미한다고 하겠다.

국제질서의 변화는 한반도와 동북아 환경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

새로운 국제 질서 하에서 동북아는 이념 대립의 지역에서 국익을 위한 국가 간 경쟁과 협력이 병존하는 지역으로 탈바꿈하고 있다. 이에 따라 동북아 국가들 간의 경쟁과 협력 관계는 점차 복잡화되는 추세를 나타내고 있다.

일본과 중국 및 러시아는 지역 강국으로서 상응한 역할을 수행하기 위하여 자국의 영향력을 확대하려 하고 있다.

특히 일본과 중국의 움직임은 동북아 지역에서 기득권을 유지하려는 미국, 냉전시대의 정치·군사적 영향력을 회복하려는 러시아의 이익과 충돌하여 갈등이 커지고 있다.

또한 동북아에서 일본과 중국의 역사적·지정학적 위상은 상호 갈등을 유발할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핵무기, 미사일과 같은 대량살상무기의 확산에 대한 우려 역시 증대되고 있다. 북한이 보유한 대량살상무기는 한반도 안보는 물론, 역내 안보에도 심각한 위협요인이 되고 있으며, 이는 한반도 통일을 위해서도 결코 바람직하지 않을 뿐 아니라 남북 관계 개선에도 중대한 장애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 이 주제를 다룰 때의 지도방향 ○

국제질서 변화가 한반도에 미치는 영향을 설명하고 한반도 통일 문제가 국제 안보 환경과 연계되어 있음을 주지시킨다.

북한의 핵무기를 비롯한 대량살상무기 개발·보유가 남북 관계 개선과 통일에 장애요인임을 이해시킨다.

나. 통일 환경 변화에 대한 대응

통일 환경의 변화에 따라 우리가 풀어야 할 과제의 성격과 내용도 변화하고 있으므로 이에 능동적으로 대처하는 지혜와 노력이 요구된다.

21세기 국제 정세는 한·미동맹의 발전적 변화, 중국 및 러시아와의 협력 강화, 동북아 지역 협력의 확대, 북핵 문제의 우선적 해결 등과 같은 다양한 과제들을 우리에게 부과하고 있다.

우리는 이러한 변화하는 환경에 부응하여 이들 과제에 대한 효과적 대응책을 모색하여야 한다.

대내외 환경의 변화는 우리에게 커다란 도전이자 기회로 작용한다. 우리는 변화하는 대내외 환경에 전략적으로 대응함으로써 이러한 변화가 통일 환경에 우호적으로 자리잡을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야 한다.

○ 이 주제를 다룰 때의 지도방향 ○

변화된 통일환경이 우리에게 주는 기회와 도전의 요인들을 구체적으로 파악하도록 지도한다.

주어진 통일환경을 수동적으로 받아들이는 것에 머물지 않고 이를 능동적으로 대처·활용하는 지혜와 노력이 필요함을 이해시킨다.

4. 통일 정책

가. 우리의 통일 방안

우리 정부의 통일 방안은 1989년 이후 보완·발전시켜온 ‘민족 공동체 통일 방안’이다.

‘민족 공동체 통일 방안’은 “하나의 민족 공동체를 건설하는 것을 목표로 점진적·단계적으로 통일을 이루어 나간다”는 기조 위에서 통일과정을 「화해협력」, 「남북연합」, 「통일국가 완성」의 3단계로 설정하고 있다.

「화해협력」단계는 남북한이 서로 체제를 인정하고 존중하는 가운데 분단상태를 평화적으로 관리하면서 경제·사회·문화 등 각 분야의 교류·협력을 통해 상호 적대감과 불신을 해소시켜 나가는 단계이다.

「남북연합」단계는 화해협력 단계에서 구축된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평화를 제도화하고 민족 공동체를 형성해 나가는 과도기 단계이다.

이 단계에서는 각기 대외적으로 주권을 유지하되 남북정상회의, 남북평의회, 남북각료회의, 남북공동사무처 등을 운영하게 된다.

「통일국가 완성」단계에서는 남북한 의회대표들에 의해 마련된 통일헌법에 따라 민주적인 선거를 통해 통일정부와 통일국회를 구성하고 두 체제의 기구와 제도를 통합함으로써 완전한 통일을 이루게 된다.

통일국가는 민족 구성원 모두에게 자유·복지·인간의 존엄성이 존중되는 자유민주국가가 되어야 한다.

○ 이 주제를 다룰 때의 지도방향 ○

우리의 통일 방안은 통일과정을 「화해협력」, 「남북연합」, 「통일국가 완성」의 3단계로 설정하고 있는데, 이러한 단계를 밟는 것이 합리적이고 현실적인 방안임을 이해하도록 지도한다.

나. 역대 정부의 평화 통일 노력

1970년대 초 남북대화가 시작된 이래 정부는 평화 통일을 이루어 나간다는 입장에서 남북 관계를 개선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오고 있다. 우리 정부의 대북정책 목표는 남북 관계를 개선하고 한반도의 평화정착을 통해 궁극적으로 평화적 통일을 이루는 데 있다.

정부는 북한의 대남도발을 억제하는 한편, 분단을 극복하고 통일을 이루기 위해 꾸준히 노력하고 있다.

1971년 8월 우리측의 제의에 따라 분단 26년 만에 남북적십자회담이 개최되면서 인도적 분야에서부터 남북대화가 시작되었다.

이후 고위 당국자 간의 비공개 접촉과 방문을 통해 1972년 7월 4일 분단 이후 최초의 남북간 합의문서인 ‘7·4 남북공동성명’이 발표되었다. 이 성명에서 남북은 ‘자주, 평화, 민족대단결’이라는 통일 3원칙에 합의하였다.

박정희 정부는 1973년 6월 ‘평화 통일 외교정책에 관한 특별선언’을 발표하여 “통일에 장애가 되지 않는다는 전제하에 북한과 함께 유엔에 가입하는 것을 반대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천명하였다.

이후 제5공화국 정부는 1982년 1월 ‘민족화합 민주통일 방안’을 발표하고, 2월에는 서울·평양간 도로 연결, 이산가족 편지교류 및 상봉, 설악산-금강산 자유관광지 개발 등을 포함한 20개항의 구체적 시범사업 실천을 제안하였다.

1984년 9월에는 우리측이 북한의 대남 수재물자 제공 제의를 받아들이고, 11월에는 남북경제회담, 적십자회담, 국회회담, 체육회담 등 일련의 회담이

성사되었으며, 1985년 9월에는 남북이산가족 고향방문 및 예술공연단 교환방문이 성사되었다.

노태우 정부는 1988년 '7·7 선언'이후 남북 대화를 통해 남북기본합의서를 체결하였다.

노태우 정부는 1988년 7월 7일 '민족자존과 통일번영을 위한 특별선언'을 발표하였다. 7·7선언의 기본 취지는 남북이 서로를 경쟁이나 대결의 상대로 보지 않고 민족 공동체 건설을 위해 협조하며, 분단의 원인이었던 냉전체제의 극복을 위해 대한민국은 중국과 소련 및 사회주의 국가와 관계개선을 추진하고 북한이 미국, 일본과 관계를 개선하여 국제사회에서 고립되지 않도록 협조한다는 것이다.

이후 7·7선언을 통한 남북 교류를 뒷받침하기 위해 국내의 법과 제도 정비에 나서 1990년 8월 남북교류에 관한 기본적 사항을 규정한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이 공포되어 우리 국민, 기업, 단체 등의 대북접촉을 위한 기본적인 제도가 마련되었다. 또한, 남북교류협력을 지원하고 촉진하기 위한 '남북협력기금법'이 같은 날 동시에 공포됨으로써 남북 간 교류협력에 탄력이 붙게 되었다.

한편, 1990년 9월에는 남북한의 총리를 수석대표로 하는 공식적인 남북고위급회담이 개최되고, 이후 1992년 2월에는 '남북 사이의 화해와 불가침 및 교류협력에 관한 합의서'(남북기본합의서)와 '한반도 비핵화에 관한 공동선언'이 채택되었다.

남북기본합의서는 서문과 함께 제1장 남북화해, 제2장 남북불가침, 제3장 남북교류·협력, 제4장 수정 및 발효 등 총 4장 25개조로 구성되어 있으며, 통일을 한민족의 공동번영을 위한 과정으로 전제하고 남북 관계 개선과 평화통일을 향한 기본 틀을 제시하였다.

한반도 비핵화 공동선언은 1980년대 중반 이후 점증하는 북한의 핵무기 개발 의혹에 대한 우리 정부의 해결 노력의 일환으로서 북한이 핵안전조치협정에 서명하고, 국제사찰을 회피하지 않고 핵을 포기하도록 유도하기 위한 것

이었다.

1989년 9월에는 동구의 사회주의 국가들이 체제전환을 시도하는 변화된 국제환경에 발맞추어 ‘한민족 공동체 통일 방안’을 발표하였다.

한민족 공동체 통일 방안은 여러 분야에서의 교류와 협력을 통해 남북한이 하나의 민족 공동체임을 확인하고, 정치적 통합 여건이 성숙되면 단일 민족 국가를 이룰 수 있다는 것으로 민족통일을 통해서 국가통일까지 실현한다는 것이다. 자주·평화·민주의 3원칙 아래 우선 남북 대화를 통해 신뢰를 회복하고, 이어 남북연합 단계를 거쳐 완전한 통일국가를 완성한다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1993년에 출범한 김영삼 정부는 ‘민족 공동체 통일 방안’을 발표하였다.

‘김영삼 정부’는 남북 정상회담 추진의지를 천명하는 등 적극적 대화를 모색하면서 ‘한민족 공동체 통일 방안’을 보다 발전시킨 ‘민족 공동체 통일 방안’을 발표(1994년)하였다.

이 통일 방안은 남북이 같은 민족으로서 경제·사회·문화공동체를 회복·발전시켜 새로운 민족 공동체를 형성함으로써 궁극적으로는 정치적 통합, 즉 1민족 1국가 1체제 1정부의 통일국가를 완성한다는 것이다. 김영삼 정부 이후 역대 정부는 민족 공동체 통일 방안을 계승하고 있다.

한편, 김영삼 출범 초기에 제1차 북핵 위기가 야기되면서 남북 관계가 위기 국면으로 치닫게 되었다. 이 같은 상황을 타개하고 남북 관계를 개선하기 위해 1994년에는 남북 정상회담을 추진하였으나 회담 직전 김일성의 갑작스런 사망으로 무산되었다.

1998년 출범한 김대중 정부는 ‘대북 화해협력정책’을 추진하였다.

‘김대중 정부’는 집권 초기부터 통일의 달성보다는 남북 관계 개선이 우선적으로 실현되어야 한다는 시각에서 일명 햇볕정책이라는 ‘대북 화해협력정책’을 추진하였다.

2000년 6월에 개최된 남북 정상회담에서 남북한의 두 정상은 ‘6·15 남북 공동선언’에 서명하였다. ‘6·15 공동선언’은 통일 문제, 이산가족과 비전향 장기수 문제, 경제협력, 당국간 대화 및 김정일 위원장 답방 등에 대한 남북한 간의 합의를 담고 있다.

그러나 남북정상회담 추진과정이 투명하지 못했다는 점과 함께 6·15 공동선언문 속의 ‘우리 민족끼리’의 협력과 ‘낮은 단계의 연방제’ 부분은 사회적 논란을 불러일으키기도 하였다.

남북 정상회담 이후 다양한 분야에서 남북 당국간의 대화가 진행되었다. 장관급회담, 국방장관회담, 적십자회담, 경제협력추진위원회 등 대화가 진행되면서 남북한 간의 실질적 문제들이 논의되고 실천 방안들이 모색되었다. 이 시기 경의선과 동해선 철도·도로 연결, 개성공단 건설, 이산가족 상봉, 부산 아시안게임 및 대구 유니버시아드대회에 북측 선수단 참가 등 다방면에 걸쳐 남북간 교류·협력이 양적으로 크게 증대하였다.

그러나 이 같은 남북교류의 증가에도 불구하고 북한은 지속적으로 핵과 미사일 프로그램을 추진해 왔다. 1998년 8월 대포동 미사일 시험 발사를 비롯하여 1999년 6월과 2002년 6월에는 북한 경비정의 서해 북방한계선(NLL) 침범으로 인한 남북 해군 사이의 교전(제1·2차 연평해전), 2003년 1월 북한의 NPT 탈퇴 선언 등 남북한 간 군사적 긴장이 조성되고 제2차 북핵 위기가 발발함으로써 남북 관계에 실질적 진전을 이루는 데는 한계를 보였다.

2003년 출범한 노무현 정부는 ‘평화번영정책’을 추진하였다.

노무현 정부는 한반도의 평화증진과 남북한 및 동북아의 공동번영을 목표로 ① 대화를 통한 문제 해결 ② 상호신뢰 우선과 호혜주의 ③ 남북 당사자 원칙에 기초한 국제협력 ④ 국민과 함께하는 ‘평화번영정책’을 제시하였다.

2007년 10월에 개최된 남북 정상회담에서 남북 정상은 ‘남북 관계발전 및 평화번영을 위한 선언’에 합의하였다. 선언문을 통해 남북은 상이한 체제에 대한 상호존중을 토대로 정치, 군사, 경제, 사회문화, 인도주의, 외교 등의 영역에서 통일을 위한 공동사업들을 추진할 것에 합의하였다.

그러나 북핵문제가 여전히 해결되지 않고 북한의 변화에 대한 가시적 성과가 없는 가운데 합의된 남북간 교류와 협력, 대북지원 등은 국민적인 합의와 지지를 이끌어내는 데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었다.

○ 이 주제를 다룰 때의 지도방향 ○

남북한 간 갈등과 적대 구조 속에서도 남북 관계를 개선하고 통일기반을 다지기 위한 역대 정부의 노력을 긍정적·부정적 평가를 곁들여 균형 있게 설명한다.

다. 이명박 정부의 대북정책

이명박 정부는 대북정책에 대한 국민적 요구, 남북 관계 변화, 북핵 문제 관련 한반도 정세 변화 등을 반영하여 '실용과 생산성'에 기초한 '상생·공영의 남북 관계 발전'을 추구하고 있다.

지난 정부의 대북정책은 남북 관계를 개선하고 북한의 변화를 촉진하는 데 일정 부분 기여해 왔다.

그러나 적극적인 교류·협력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국론 분열과 일방적 대북지원 등에 대한 국민적 우려와 비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었다.

특히 북한의 미사일 발사, 핵실험 등으로 인해 기존의 정책에 대한 비판이 고조됨에 따라 대북정책은 다른 어느 분야보다도 국민적 합의의 바탕위에서 추진해야 할 필요성이 증대되었다.

남북 관계 발전 및 남북 관계의 역학 구도도 변화하고 있다. 민주주의와 시장경제의 발전을 통해 우리의 국력이 신장된 가운데 북한 경제의 대남 의존도가 증가하였고, 북한 주민의 대남의식도 변화하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 정부가 적극적으로 남북 관계의 변화를 견인할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한편, 북핵문제가 한반도 정세를 가름하는 주요 변수가 됨에 따라 6자 회담이 북핵문제 해결의 틀인 동시에 향후 한반도 정세의 중요한 고려요소로 등

장하였다. 이에 따라 북핵문제 해결 과정과 관련한 정세의 흐름을 정확히 읽고 한반도에서 새로운 변화를 능동적으로 창출해야 할 시점에 와 있다.

정부는 한반도에서 새로운 변화의 기회를 적극 활용하여 북한의 비핵화와 상호존중을 바탕으로 한 상생·공영의 남북 관계를 추구함으로써 한반도에 평화를 정착시키고, 평화 통일의 실질적 기반을 구축해 나가고자 한다.

이명박 정부의 대북정책은 실용과 생산성, 원칙에 철저하되 유연한 접근, 국민 합의, 남북 협력과 국제 협력의 조화라는 4가지 원칙 아래 추진한다.

첫째, 실용과 생산성에 입각하여 국민이 동의하고 국민이 원하는 성과를 내는 정책을 추진하고, 북한주민의 삶 개선과 북한의 발전적 변화를 촉진해 나간다.

둘째, 북핵 폐기 원칙은 철저하게 견지하여 원칙 있고 성과 있는 대화를 추진하되, 그 접근 방식은 유연하게 대처해 나간다.

셋째, 국민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여 투명하게 정책을 추진하고, 초당적인 협력을 상시화하며, 생산적이고 투명하게 남북협력기금을 운용해 나간다.

넷째, 남북 관계 개선과 함께 유관국과의 조율을 통해 국제사회의 신뢰와 협조를 확보하고 보편적 가치에 입각한 남북 관계 발전을 지향해 나간다.

정부는 북한 핵문제 해결과 남북한의 상생과 공영을 실현하기 위해 「비핵·개방·3000」을 제시하였다.

「비핵·개방·3000」은 북한의 핵 폐기 결단을 촉진하는 환경을 조성하는 동시에 남북한이 공동번영의 길을 모색하고자 하는 일대 프로젝트이다.

한반도의 비핵화를 위해 북한이 핵 폐기의 결단을 내린다면 한국은 국제사회와 함께 북한의 1인당 국민소득이 10년 내에 3,000달러 수준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한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 북한의 핵 폐기 진전 상황에 따라 국제사회와 협력하여 북한의

경제재건 및 주민생활 개선을 위한 5대 분야(경제·교육·재정·인프라·생활향상)에 걸친 ‘포괄적 패키지 형태의 지원’을 제공한다는 것이다.

특히, 「비핵·개방·3000」은 이명박 정부 대북정책의 구체적 추진전략으로 그 세부 내용은 향후 남북 대화를 통해서 확정될 것이다.

큰 틀에서 보면 북한 핵폐기 진전에 따라 단계적으로 북한을 도와주는 실천 계획을 뜻하는 한편, 북한의 비핵화 이전이라도 북한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최소한의 인도적 지원은 제공하고, 이를 비핵화의 단계에 맞추어 확대해 나감으로써 북한의 핵 포기를 촉진하는 방안 등을 담고 있다.

또한, 「비핵·개방·3000」은 통일비전을 포함하고 있다. 「비핵·개방·3000」이 본격적으로 가동되어 남북간 인적·물적 교류가 심화되면 사실상 남북 경제공동체가 실현될 것이다.

북한이 1인당 국민소득 3천 달러 수준에 도달하면, 통일 비용도 줄이고 사회적 충격을 흡수하면서 안정적인 평화 통일을 이룩할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될 것이다. 1인당 국민소득이 3,000달러가 된다는 것은 중산층 성장을 뜻하며, 북한이 이 수준에 도달할 때 남북간 통일에 관한 논의도 더욱 활성화될 수 있다는 것이다.

우리 정부는 「비핵·개방·3000」을 근간으로 북핵문제 해결을 위한 일괄타결 방안으로 ‘그랜드 바겐’(Grand Bargain)을 제안하여 추진하고 있다.

그랜드 바겐은 6자회담 또는 남북 대화를 통해 북핵 프로그램의 핵심부분 폐기와 동시에 북한에 대한 확실한 안전보장 및 경제지원을 제공하는 방안이다. 이는 북한의 자의에 따라 진전과 퇴행을 반복하며 문제해결을 어렵게 만들었던 과거 북핵협상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새로운 접근으로 북핵의 비가역적 폐기를 추구하고 있다.

정부는 2010년도 8·15 경축사를 통해 기존의 현상유지적 ‘분단관리’에서 미래지향적 ‘통일대비’로의 패러다임 전환을 강조하며, 3대 공동체 통일 구상과 실질적 통일준비를 위한 통일세 등 재원조달 방식 등에 대한 논의를 제안

하였다.

3대 공동체 통일구상은 기존의 민족 공동체통일 방안을 계승하며, 이를 더욱 구체화한 것으로 평화·경제·민족 공동체를 상정하고 있다.

평화 공동체와 경제 공동체, 민족 공동체는 단계적·기계적 선후관계가 아니라, 기능적으로 상호작용하면서 상호 중첩적으로 진행될 것이다.

다만, 현재 가장 시급한 문제가 북한의 비핵화를 비롯한 한반도의 안정과 평화 정착이기 때문에 평화공동체 실현은 평화 통일로 가는 과정의 출발점이 될 것이다.

한편, 통일세 등 재원조달방안 논의의 공론화는 통일 문제를 현실의 과제로 보는 것으로, 재원문제를 단순한 세금징수의 문제가 아니라 중장기적인 통일 준비와 과정의 일환으로서 종합적으로 논의해 가자는 것이다.

통일준비에 대한 공론화 과정을 거쳐 통일과정과 재원조달에 관한 사회적 합의를 도출해 나가야 할 것이다.

2011년도 대북정책 추진방향은 ‘북한의 바람직한 변화 유도’, ‘바른 남북 관계 정립’, ‘실질적 통일에 대한 준비’에 중점을 두고 있다.

한반도의 미래와 민족의 장래를 위해서는 북한의 근본적 정책변화가 반드시 선행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 정부는 「비핵·개방·3000」을 근간으로 ‘3대 북한변화 구상’ 추진을 통해 북한을 핵보유가 아닌 비핵·평화로, 대외고립이 아닌 대외개방으로 유도해 나가고, 북한 주민을 우선시 하는 정책으로 바꾸어 나가도록 정책적 노력을 경주해 나갈 것이다.

이를 통해 바른 남북 관계를 정립해나가고, 북한이 정상국가로서 국제사회의 책임 있는 일원으로 발전해 나갈 수 있도록 이끌어 나갈 계획이다.

특히 정부는 북핵문제 해결의 시급성을 감안해 북한의 비가역적 비핵화를

적극 구현하고자 한다. 국제사회와 협력하여 그랜드 바겐을 통한 북핵문제 해결의 돌파구를 마련해 나가도록 할 것이다.

북한당국에 대해서는 책임성과 진정성을 견인하는 한편, 북한주민들에게는 실질적 인권 개선의 여건을 마련하고 그들에게 직접 혜택이 돌아가는 인도적 지원을 해 나갈 계획이다.

이산가족, 납북자·국군포로 문제는 정부가 계속 견지해 온 일관된 원칙에 따라 북한당국에게 근본적 해결을 촉구해 나갈 것이다.

기존의 남북 교류·협력 체계는 새로운 남북 협력 시대에 대비하여, 공정하고 투명한 방향으로 전면적으로 개편해 나갈 것이며, 개성공단은 체류인원의 신변안전을 최우선으로 하여 운영해 나갈 방침이다.

한편 정부는 실질적인 통일 준비를 위해 국민적 통일 의지를 구체화하는 재원과 인재, 정보를 확보하고, 국제 협력을 적극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이를 위해 5대 공론화 사업, 한반도 미래 대화 등 통일의 실질적 기반 구축을 위한 대내외적 조치들을 추진해 나갈 것이다.

이와 함께 북한이탈주민의 안정적 사회 정착과 일자리 창출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일자리 2,000개 사업과 사회적 기업의 확대, 소자본 창업 지원을 위한 희망가게 프로젝트는 물론, 탈북청소년들에게 교육기회를 균등하게 제공할 수 있는 제도적 방안을 마련해 나갈 것이다.

○ 이 주제를 다룰 때의 지도방향 ○

우리 정부의 대북정책 기조 및 구체적 정책구상의 배경과 의미를 이해시킨다.
통일준비의 공감대를 넓히면서 통일준비 과제들이 무엇인지 탐구하도록 한다.

5. 통일을 위한 과제

통일 미래 비전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를 확산시켜 나가야 한다.

통일은 국가적 차원의 이해관계에 그치지 않고 개인적 차원의 이해와도 직결되는 우리 시대의 과제이다. 즉, 통일 문제는 특정 집단이나 계층에만 해당되는 문제가 아니라 분단된 한반도에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해당되는 문제라는 것을 이해시켜야 한다.

통일이 가져오는 이익에 대한 권리 행사뿐 아니라 통일을 실현시키는 과정에서 요구되는 의무와 책임에 대해서도 분명히 인식해야 한다.

특히 통일의 과정에서 발생하게 되는 경제적·사회적 비용 부담의 불가피성에 대한 인식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 통일교육이다. 올바른 통일교육을 통해 남북문제를 둘러싼 우리 내부의 갈등을 해결해 나가는 한편, 통일미래 비전과 그것을 실현할 방법 등에 대한 국민적 합의와 공감대를 형성·확산시켜 나가야 한다.

나아가 통일에 대한 실질적·구체적 준비가 필요하다. 이제 통일은 관념의 문제가 아니라 현실의 문제이기 때문이다. 통일재원 마련 문제를 비롯하여 분야 별로 구체적인 통일 준비에 착수하는 노력이 중요하다.

우리 모두가 통일 문제에 대한 열정과 관심을 가지고 올바른 방향에서 함께 노력해 나갈 때 우리가 바라는 통일을 성취할 수 있다.

자유 민주주의의 가치와 민주시민 의식을 더욱 성숙시켜야 한다.

성숙한 민주주의의 사회는 사회 구성원들이 자신들의 권리만큼이나 사회적 책임감을 자각하고 타인에 대해서도 배려할 것을 요구한다.

통일한국으로의 출발점은 사회 구성원 간에 차이를 서로 존중하고, 민주적

의사소통을 통해 갈등을 해결해 나가는 민주주의의 실천으로부터 비롯된다고 할 수 있다.

우리 사회의 현안들조차도 대화와 타협을 통해 평화적으로 풀지 못한다면 남북한의 차이를 극복해야 하는 통일의 과제는 더욱 성공하기 어렵다.

우리 사회에 정착한 북한이탈주민들을 배려하고 이해하며 함께 더불어 살아갈 수 있는 역량을 갖추어 나가야만 향후 남북한 주민들의 조화로운 통합도 기대할 수 있다.

북한 동포의 이질성을 감싸 안으려는 자세는 다른 사람을 배려하는 민주시민 의식의 연장선상에서 비롯된다. 또한 북한동포의 행복을 인간으로서 당연히 누려야 할 기본적인 권리 문제로 접근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통일에 이르는 과정뿐 아니라 통일 이후를 대비하기 위해서도 먼저 우리 자신의 자유 민주주의적 가치와 제도를 성숙시켜야 한다. 북한 동포들이 동경하고 따를 수 있는 자유 민주주의와 제도가 우리 사회에 뿌리내릴 때 북한 동포들에게 자유 민주주의의 진정한 가치를 이해시키고 수용하도록 설득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한반도 평화 정착을 위한 국가 안보 역량을 갖추어야 한다.

북한 핵문제는 한반도의 안보 불안을 초래하고 다른 분야의 남북 관계 발전을 가로막는 가장 큰 장애요인이다. 그리고 궁극적으로 북한 핵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한 통일은 요원한 문제가 된다. 주변국들 또한 우리를 평화애호국가로 인정하지 않을 것이다.

따라서 한반도 평화정착과 통일을 위해서는 북한 핵 문제를 우선 해결하고 이와 함께 남북 간 군사적 긴장 완화와 신뢰 구축을 진전시켜 나가야 한다. 궁극적으로는 이러한 방향에서 현재의 정전 상태도 항구적인 평화 상태로 전환시켜 나가야 한다.

그러나 현 단계에서는 남북한이 군사적으로 대치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하여 스스로 국가안보를 확고히 지켜나갈 수 있는 튼튼한 안보의식과 역량을

갖추어야 한다.

나아가 통일을 향한 우리의 노력도 한반도 평화 정착과 국가 안보의 토대 위에서 전개되어야 함을 인식해야 한다.

원칙과 기본을 지키는 교류·협력을 통해서 남북 관계를 생산적이고 발전적인 방향으로 개선해 나아가야 한다.

남북 교류·협력의 확대는 남북한 간의 불신과 적대 관계를 해소하고 신뢰 구축을 통해서 한반도에 상생과 화합의 분위기를 조성하는 촉매 역할을 한다.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예술 등 다방면에서 남북한 간 인적, 물질 교류와 협력을 활성화함으로써 남북한 간 상호이해를 증진하고, 궁극적으로 민족의 동질성 회복과 상생·공영을 이룩하여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남북 교류·협력의 내실화를 기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일시적인 남북 관계 개선 효과에 급급해 하기보다는 통일을 지향하는 과정에서 통일에 우호적인 환경을 구축할 수 있도록 발전적인 남북 관계를 형성하는 것이 중요하다.

통일의 효과적 달성을 위해서는 국제사회의 지지와 협력을 확보해야 한다.

한반도 주변국 등 국제사회의 적극적 지지와 협력은 한반도 통일에 필수적인 요소이다. 한반도 주변국들과 협력관계를 진전시켜 나가면서 한반도 통일에 대한 이들의 지지와 협력을 확보해야 한다.

아울러, 통일한국이 동북아는 물론 세계의 평화와 번영에 기여할 것이며 주변국들 모두에게 이익을 가져다 줄 것이라는 것을 확신시켜야 한다.

○ 이 주제를 다룰 때의 지도방향 ○

통일을 촉진시키기 위한 현 단계의 생산적이고 실질적인 노력이 무엇인지를 이해시킨다.

통일 한국의 달성을 위한 노력을 국가적 차원, 사회적 차원, 그리고 개인적 차원에서 구분하여 이해하고, 특히 개인적 차원에서 할 수 있는 역할이 무엇인지를 주지시킨다.



부 록

- 통일교육 현장체험 장소 안내
- 학교 IPTV 통일교육 콘텐츠 안내
- 2010년도 통일교육원 발간자료 안내
- 통일교육 지원법
- 통일교육 지원법 시행령

통일교육 현장체험 장소 안내

통일관

통일관은 지역 주민과 청소년들이 각종 통일관련 전시물과 영상자료 등을 통해 북한의 실상과 남북 관계 현황, 통일환경 및 안보현실을 객관적으로 이해하고 통일의식을 함양할 수 있도록 돕는 통일체험학습의 장이다.

통일관은 현재 전국 13개 지역에 설치되어 있으며, 지방자치단체나 민간단체, 기업체, 학교 등이 운영하고 있다. 정부는 통일관에 각종 전시자료, 북한 관련 특수자료 및 영상자료 등을 지원하고 있다.

■ 전시자료

- 통일노력의 발자취와 오늘의 남북 관계를 알려주는 패널 자료
- 북한의 정치, 경제, 사회 등 분야별 실상 자료
- 북한위성TV 및 영화 등 영상자료, 노동신문 등 간행물 자료(8곳)
- 북한 생활용품(오두산, 서울 등 2곳은 소학교와 살림집 모형도 전시)

■ 관람시간

- 3월~10월 09:00~18:00, 11월~2월 09:00~17:00
 - ※ 관람시간은 각 지역 통일관의 사정에 따라 1~2시간 정도 차이가 있을 수 있음.
- 각 통일관에 따라 일/월/화요일, 명절 등에 휴관, 또는 연중무휴 개관

■ 전국 통일관 현황

통일관명	위 치	운영주체	연락처	휴 관
서 울	서울시 구로구 공동	서서울생활과학고등학교	02) 2688-5591	일
인 천	인천 남구 송의4동 수봉공원내 자유회관	자유총연맹 인천지회	032) 868-0113	일
오 두 산	경기 파주시 탄현면 오두산통일전망대	(주)동화진흥	031) 945-3171	무휴
고 성	강원 고성군 현내면 통일전망대	(주)통일전망대	033) 682-0088	무휴
양 구	강원 양구군 해안면 편치불자구	양구군	033) 480-2674	월
철 원	강원 철원군 동송읍 철의삼각지	철원군	033) 450-5558	무휴
대 전	대전 유성군 도룡동 엑스포과학공원	대전엑스포과학공원	042) 866-5114	월
충 남	충남 공주시 웅진동	자유총연맹 충남지회	041) 881-1212	월, 명절
청 주	충북 청주시 상당구 청주랜드	청주시 청주랜드관리사업소	043) 256-5050	월, 명절
광 주	광주 서구 화정2동 화정근린공원	통일교육위원광주협의회	062) 385-1301~2	월
부 산	부산 부산진구 초읍동 자유회관	자유총연맹 부산지회	051) 808-7960~3	무휴
경 남	경남 창원시 용지동 자유회관	자유총연맹 경남지회	055) 282-2332~3	일
제 주	제주시 일도2동 탐라자유회관	자유총연맹 제주지회	064) 751-0191~2	일

오두산 통일전망대

한강과 임진강이 만나는 곳에 위치한 오두산 통일전망대에서는 임진강 너머 북한 지역이 바라다 보인다. 황해북도 개성시 관산지역의 주택과 각종 시설, 도로와 논밭, 주민의 농사짓는 모습 등을 직접 관찰할 수 있다.

이 전망대 내에 있는 통일관에서는 북한의 실상과 통일 문제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한 여러 가지 자료들을 볼 수 있다.

북한의 정치, 군사, 경제, 교육 등 사회 각 분야와 의·식·주 생활에 대한 설명 자료와 함께 교과서, 신문, 각종 생활용품 등 북한 물품들이 전시되어 있다. 북한의 공연, 만화영화, TV 등의 영상물도 상영된다.

또한 통일노력의 역사와 현황도 살펴볼 수 있으며, 북한에 위탁가공으로 생산한 제품들과 개성공단에서 북한 근로자들이 생산한 제품들을 눈으로 확인할 수 있다.

■ 관람시간 (입장가능 시간)

- 11월~2월 : 오전 9시~오후 4시 반
- 4월 ~ 9월 : 오전 9시~오후 5시 반
- 3월 · 10월 : 오전 9시~오후 5시

■ 교통편

서울(2호선 합정역)에서 전망대 입구의 통일동산까지 가는 광역버스가 있으며, 버스종점에서 전망대까지 셔틀버스가 운행된다.

■ 참조 / 문의

- 웹사이트 : www.jmd.co.kr
- 전화 : 031) 945-3171, 3173, 2390

도라산역

도라산역은 경의선의 남측 최북단 역으로, 비무장지대(DMZ) 남방한계선에 인접해 있다. 파주시 장단면에 있는 이 역으로부터 개성공단 입구에 위치한 북한의 판문역까지 거리는 7km, 개성역까지는 17km이다.

이 역의 선로와 승강장은 국내선과 국제선으로 구분되어 있다. 국제선은 북한 왕래에 이용되며, 향후에는 북한을 거쳐 중국, 러시아와 유럽까지 이어질 수 있을 것이다.

도라산역은 2000년 남북 합의에 따라 경의선 철도 연결 공사가 시작된 후 2002년 4월에 개통되었다. 이후 2003년 6월에 남북 철도 궤도의 연결, 2007년 12월부터 문산역~판문역 간 정기화물열차 운행이 이루어졌다(화물열차 운행은 2008년 12월부터 중단).

경의선 철도로 개성공단 등을 왕래하는 인원과 화물은 도라산역에 있는 경의선 철도 남북출입사무소에서 출입경 심사, 통관, 검역 등을 거친다.

도라산역 인근에는 경의선 도로 남북출입사무소, 물류센터, 도라산 평화공원, 도라전망대 등이 있다.

도라전망대

파주시 군내면에 있는 도라전망대는 비무장지대 남방한계선에 바로 접해 있다. 이 전망대에서는 북한의 기정동(비무장지대 내 마을), 금암골(협동농장)과 개성공단, 그리고 개성 시가지 일부와 김일성 동상 등을 바라볼 수 있다.

전망대 근처에는 도라산역과 제3땅굴이 있다.

제3땅굴은 북한이 남침 목적으로 군사분계선을 넘어 435m 지점까지 파내려오다 1978년 우리측에 의해 발견된 땅굴이다.

■ 도라산역 · 도라전망대 견학 방법

도라산역과 도라전망대를 견학하는 방법에는 몇 가지가 있다. 즉, ① 임진각 관광지에서 셔틀버스(도라산역 · 도라전망대 · 제3땅굴 순회)를 이용하는 것 ② 열차를 이용해 도라산역으로 가서 도라전망대 · 제3땅굴 연계관광 셔틀버스를 이용하는 것 ③ 30인 이상 단체로 자체 버스를 이용하는 것 등이다. 월요일과 주중 공휴일에는 휴무이므로 견학할 수 없다.

민간인통제구역에 위치한 도라산역과 도라전망대 등에 출입하기 위해서는 임진각 관광지 또는 임진강역에서 출입허가 절차를 거쳐야 한다. 임진각 관광지에서 셔틀버스를 이용하거나 자체 버스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임진각 DMZ관광대표소에 신분증을 제시하고 출입신청을 한다.

열차를 이용해 도라산역으로 가는 경우에는 임진강역에서(임진강역까지 열차를 타고 간 경우에는 하차하여) 신분증을 제시하고 출입신청을 한다. 도라산역까지만 가고자 한다면 임진강역에, 연계관광을 하고자 한다면 임진강역 파주관광대표소(031-940-8369)에 출입신청을 한다.

임진강역-도라산역 간은 별도로 운행되는 열차를 이용하여 이동한다. 임진강역-도라산역 간 열차 운행은 하루 3회(임진강발 11:00, 11:40, 12:40) 있으며, 그 중 1회(11:40)는 연계관광이 되지 않는다. 임진강역-도라산역 간에 열차로 출입할 수 있는 인원은 1회당 최대 300명(도라산역만 방문은 120명, 연계관광은 180명)으로 제한되어 있다.

자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파주문화관광 웹사이트(tour.paju.go.kr - 파주관광 - 평화체험)를 참조하거나 임진각관광안내소(031-953-4744), DMZ관광대표소(031-954-0303) 등에 문의한다.

열차-셔틀버스 이용시 출입신청(임진강역) → 열차 탑승 → 도라산역 → 셔틀버스 탑승 → 제3땅굴 → 도라전망대 → (통일촌) → 도라산역 → 열차 탑승 → 임진강역

셔틀버스(30분~1시간 간격) 이용시 출입신청(임진각 관광지) → 셔틀버스 탑승 → 제3땅굴 → 도라전망대 → 도라산역 → 통일촌 → 임진각 관광지

임진각

임진각 관광지는 남북이산의 한을 달래고 통일을 염원하는 장소로서 임진강 변에 개발되었다. 임진각은 1972년 남북공동성명 발표 직후에 이곳에 지어진 건물로, 옥상에 전망대가 있다.

군사분계선으로부터 약 5km 떨어진 이곳에는 또 실향민들이 북녘에 있는 가족과 조상에게 배례하는 망배단, 그리고 정전협정 체결 후에 포로들이 남쪽으로 귀환할 때 이용한 ‘자유의 다리’가 있다. 자유의 다리에는 방문자들이 북녘 고향과 혈육을 그리거나 통일을 염원하는 내용의 글귀들을 적어놓은 펼침막과 리본 등이 수없이 내걸린다.

임진각 옆 임진강에는 경의선 철도 교량 하나가 복구되어 있다. 경의선 철도는 이제 임진강 철교와 도라산역을 거쳐 북측의 판문역으로 연결되어 있다.

임진강 철교는 당초에 복선이었으나, 6·25전쟁 중에 두 철교가 모두 파괴된 후 하나만 복구되었고 다른 하나는 교각만 남아 있는 상태이다.

6·25전쟁 중 1950년 12월 장단역에서 멈춰선 뒤 50여 년간 비무장지대에서 녹슨 채로 있던 증기기관차(화통)는 보존처리를 거쳐 2009년 6월 25일부터 임진강 철교 근처에 전시된다.

임진각 관광지에는 그 밖에 6·25전쟁 전적 기념물들, 경기평화센터, 평화누리 등도 있으며, 도라산역·도라전망대·제3땅굴 등을 순회하는 셔틀버스가 이곳으로부터 운행되고 있다.

자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파주문화관광 웹사이트(tour.paju.go.kr - 파주관광 - 평화체험)를 참조하거나 임진각관광안내소(031-953-4744)에 문의한다.

■ 교통편

- 파주 문산터미널에서 임진각까지 시내버스 운행
- 철도 이용시 임진각역에서 하차하여 도보(10분 소요)로 이동

판문점

판문점은 군사분계선을 사이에 두고 남북이 군사적으로 대치하고 있는 분단의 상징인 동시에 다양한 분야에서 남북 대화와 교류가 이루어져 온 통로이기도 하다.

판문점은 1953년 7월 27일 정전협정이 맺어진 곳으로, 정전협정의 이행을 위해 설치된 군사정전위원회와 중립국감독위원회 등 기구들이 위치한 특수지역이다. 판문점의 공동경비구역(Joint Security Area) 내에서 유엔군사령부측과 북한측이 군사분계선을 경계로 남쪽과 북쪽을 각각 관할한다.

군사분계선 남쪽 구역에는 남북간의 연락 업무를 수행하는 남북연락사무소(우리측)가 소재한 ‘자유의 집’과, 남북회담이 열리는 ‘평화의 집’이 있으며, 북쪽 구역에는 북측의 판문각과 통일각이 있다. 판문점 근처에는 남과 북의 민간인 마을로서 각각 유일하게 비무장지대 내에 위치한 대성동과 기정동이 군사분계선을 사이에 두고 서로 마주해 있다.

■ 견학신청

판문점 견학은 월~토요일에 할 수 있다. 판문점 견학 희망자는 방문희망일 60일 전에 신청해야 하며, 이후 구비서류를 갖춰 제출한다.

학교, 정부허가법인, 공무원 등은 통일부 남북회담본부(031-950-9200,9208)에, 그 외 일반인은 국가정보원 안보상담센터(국번 없이 111)에 신청한다. 접수처는 30~45명의 단체 견학을 주선하므로, 인원이 소수인 경우에는 단체 구성 등에 관해 접수처와 협의한다.

판문점 방문에는 약 90분이 소요된다(브리핑 30분, 견학 60분). 방문자는 신분증 휴대, 단정한 복장 착용 등 준수사항을 반드시 지켜야 한다.

구체적인 신청절차와 서류 양식, 방문자 준수사항 등 자세한 사항에 대해서는 통일부 남북회담 웹사이트(dialogue.unikorea.go.kr - 판문점 - 판문점 방문/견학)를 참조하거나 접수처에 문의한다.

통일부 북한자료센터

통일부 북한자료센터는 북한 및 통일 문제에 대한 국민들의 이해와 전문 연구의 활성화를 위하여 1989년 5월 정부의 특수자료 공개정책에 따라 설치되었다.

북한의 영화, 가요 등의 시청각 자료와 북한 및 통일 관련 국내외의 다양한 문헌자료를 제공한다. 북한 영화는 매월 마지막 주 금요일에 정기상영을 하고 있고, 단체신청을 받아 수시상영도 하고 있다. 이외에도 북한 TV방송 시청실을 운영하고, 북한실상 설명회도 개최한다.

■ 이용시간

- 평일 09:00~18:00

■ 교통편

- 지하철 2호선 서초역(6번 출구)에서 도보 15분(국립중앙도서관 내 위치)
- 지하철 7호선 고속버스터미널역(5번 출구)에서 도보 10분

■ 참조/문의

- 웹사이트 : unibook.unikorea.go.kr
- 전화 : 02) 730-6658

학교 IPTV 통일교육 콘텐츠 안내

청소년들의 올바른 통일관을 확립하고, 학교 통일교육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통일부 통일교육원에서는 2011년부터 학교 IPTV에 통일교육 콘텐츠를 제공하고 있다. 이 콘텐츠들은 통일교육원 홈페이지(<http://www.uniedu.go.kr>)에서도 볼 수 있다.

〈학교 IPTV 교과·재량용 콘텐츠〉

교과용 콘텐츠		재량용 콘텐츠		
초2 바른생활	북한과 우리는 한민족	초1~3	통일, 왜 해야 하나요?	
	북한 어린이의 생활		북한은 우리에게 어떤 존재인가요?	
	통일이 필요한 이유		어린이는 나라의 보배	
	통일 기원		통일은 어른들만의 일인가요?	
초3 도덕	우리는 하나였는데		타임머신을 타고	
	하나가 되기 위한 노력		2학년1반, 북한 어린이들의 하루	
	통일을 향하여		숙모는 평양아가씨	
초4 도덕	함께하는 마음		김치와 냉면	
	하나가 되기 위한 노력		데미구름 많은 날거리	
	통일을 위한 작은 실천		입장 바꿔 생각해 봐요	
초5 도덕	평화 통일의 당위성 알기		다시 만나고 싶어요	
	평화통일에 대한 확고한 신념 다지기		북한 어린이가 좋아하는 것은?	
	평화통일을 위해 할 수 있는 일 찾아 실천하기		통일열차 쌍쌍, 한반도를 달려라	
초6 도덕	통일조국의 미래 모습 알아보기		타임머신을 타고 통일 한국으로 떠나요!	
	평화통일의 뜻을 지니고 준비하는 마음 다지기		초4~6	통일 미래, 이렇게 좋아져요
	평화통일을 이루기 위해 할 수 있는 일 실천하기			광혁이는 왜 우리나라에 왔을까요?
초6 사회	분단을 딛고 일어난 대한민국	전학생 리철수		
	한강의 기적에서 통일로	우리반은 남북통일반		
	통일을 위한 우리의 노력			
	통일 한국의 미래			

교과용 콘텐츠		재량용 콘텐츠	
중2 도덕	통일의 의미	초4~6	갈라진 삶, 다른 삶
	북한 주민들의 정치생활		갈라진 삶, 같은 삶
	북한 주민들의 경제생활		북한 어린이는 학교에서 무엇을 배우나요?
	북한 주민들의 사회·교육·문화생활		북한은 민주주의 국가?
	신라와 고려의 통일 사례와 교훈		북한은 왜 식량이 부족할까요?
	외국의 통일 사례와 교훈		한반도 평화의 걸림돌, 북한 핵무기
	남북대화의 실천 사례		끝나지 않은 전쟁
	통일을 위해 우리가 해야 할 일		주변국의 협조가 필요해요
중3 생활국어	남북한 언어 차이의 이유	중1~고1	통일, 어떻게 이루어야 할까요?
	남북한 언어 차이의 실태1		통일을 하면 무엇이 달라질까요?
	남북한 언어 차이의 실태2		더 큰 대한민국, 더 큰 미래
	남북한 언어 차이로 생길 수 있는 일		북한의 대남전략을 통해 본 통일문제
	남북한 사람들이 서로의 언어에 대해 어려워하는 점		특명! 통일의 걸림돌을 파내라
	남북한 언어 차이의 해소 방안		100분 토론 : 통일, 어떻게 해야 하나
중3 사회	남북한의 협력과 민족 통일	북한 친구들이 가지고 있는 고민은 무엇일까?	
	국토통일의 의미와 민족의 발전	핵의 양면성	
	미래사회를 위한 우리의 과제	북한 핵의 위험성을 진단한다	
중3 국사	대한민국 정부의 수립	통일비용보다 큰 통일편익	
	민주화운동과 통일을 위한 노력	우리의 이웃, 북한이탈주민 바로알기	
고1 도덕	남북한의 언어와 생활 문화	주변국의 협조를 서까래로!	
	남북한의 규범 및 가치	독일통일을 통해 본 통일 이후의 우리 모습	
	분단 극복의 필요성과 장애요인	통일이 주는 효과 : 자원강국	
	남북한 통일정책의 비교	통일이 주는 효과 : 선진일류국가	
	한민족공동체의 의미와 당면 과제	분단이 남긴 선물, DMZ	
	민족공동체의 과제 해결을 위한 준비		
	통일한국이 극복해야 할 어려움		
	통일한국의 바람직한 국가상		

〈학교 IPTV 특별기획 프로그램〉

구분	주제	프로그램	내용	분량
시기별	독일통일 20주년	통일리포터, 통일독일가다	독일 통일 20주년을 맞아, 미래 통일한국을 짚어질 청소년과 또래인 아역스타가 보고 느낀 통일을 이룬 나라 "통일 독일"의 생생한 체험담을 로드다큐형식으로 제작	60분 1품 20분 3품
	명절	통일 한마당	황해도 실향민들이 새로운 삶의 터전으로 이룬 전북 김제 용지마을을 통일밴드로 구성된 고등학생들이 방문, 실향민의 아픔과 그리움, 시골의 정겨움을 느끼는 리얼 버라이어티 프로그램	60분 1품
	연말	랭킹쇼우최통 (우리가 뽑은 최고의 통일 금금중)	초·중고등학생과 통일교육관련 전문가 설문조사를 통하여 청소년들이 직접 뽑은 통일금금으로 남북관계·통일미래를 함께 토론하는 계기를 만들어 나가도록 하는 프로그램	60분 1품 10분 6품
이슈별	감성접근	U & I (Unification&I)	북한사회와 한반도정세를 제대로 알게 하고, 〈통일과 나〉, 〈통일과 우리〉의 상관성을 보다 현실적인 측면에서 이해시킴으로써 통일의 필요성을 공감하도록 하는 지식채널 방식의 영상물	10분 6품
	북한도발사	시사다큐	북한 무력도발에 대한 객관적 정보제공을 통하여 청소년들의 남북 대치상황에 대한 인지제고 및 안보의식 강화를 도모하는 프로그램	20분 1품
	북한 이탈주민 청소년	통일의 작은 실험실 셋넷학교 (휴먼 다큐)	탈북 청소년들이 탈북에서부터 국내 정착과정에서 겪는 고민과 어려움을 휴먼다큐형식으로 제작, 탈북자에 대한 청소년의 이해를 제고하도록 하는 프로그램	60분 1품
	통일과 미래	미리보는 통일한국, 통일경제	천연자원(중국), 교통인프라(러시아), 노동력(베트남), 관광자원(캄보디아) 사례를 통하여 통일경제에 대한 비전을 알아보는 시사 다큐	15분 4품
이벤트	다큐 버라이어티	우리가 만든 통일노래	초등학교 학생들과 고등학교 학생들이 '통일노래'를 만들기 위하여 직접작사부터 작곡·연주·노래까지 완성하는 과정을 통하여 통일문제에 대해 이해해 나가는 리얼 드라마	20분 2품

2010년도 통일교육원 발간자료 안내

통일교육원에서는 통일교육 지도에 필요한 각종 자료를 발간·제공하고 있으며, 홈페이지(<http://www.uniedu.go.kr>)에서도 볼 수 있다.

통일교육 교재

- 통일문제 이해
- 북한 이해
- 통일교육 지침서(학교용)
- 통일교육 지침서(일반용)

공모·소감 자료

- 제29회 대학생 통일논문 현상공모 입상작 모음집
- 2010 평화통일대행진 참가자들의 이야기

주제강좌 시리즈

- 미래지향적 학교통일교육의 구현
- 미래를 위해 남겨놓은 과거, DMZ

영상자료

- 슈퍼스타 K2 통일 뮤직비디오(허각, 장재인, 김지수, 이보람, 앤드류 벨슨 등)
- DMZ에서 바라본 분단과 통일
- 평화통일대행진 5박 6일의 기록
- 더 큰 대한민국을 향해

통일교육 연구자료

- 통일교육 사례발표 자료집
- 인천지역 학교통일교육발전 워크숍 자료집
- 광주지역 학교통일교육발전 워크숍 자료집
- 대구지역 학교통일교육발전 워크숍 자료집
- 대전지역 학교통일교육발전 워크숍 자료집
- 전북지역 학교통일교육발전 워크숍 자료집

통일교육 지원법

[일부개정 2009.10.19, 법률 제9800호]

제1조 (목적)

이 법은 통일교육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통일교육”이란 자유민주주의에 대한 신념과 민족공동체의식 및 건전한 안보관을 바탕으로 통일을 이룩하는 데 필요한 가치관과 태도를 기르도록 하기 위한 교육을 말한다.
2. “지역통일교육센터”란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통일교육을 하고, 통일교육에 관한 정보를 수집·제공하는 기능 등을 수행하기 위하여 제6조의3에 따라 통일부장관이 지정하는 기관·단체 또는 시설을 말한다.

제3조 (통일교육의 기본원칙)

- ① 통일교육은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수호하고 평화적 통일을 지향하여야 한다.
- ② 통일교육은 개인적·당파적 목적으로 이용되어서는 아니 된다.

제3조의2 (통일교육 기본사항)

- ① 통일부장관은 제3조의 기본원칙에 따른 통일교육을 하기 위한 기본사항을 정한다.
- ② 통일부장관은 통일교육에 관한 기본사항을 정할 때에 미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하여야 한다.

제4조 (통일교육기본계획의 수립)

- ① 통일부장관은 통일교육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통일교육기본계획(이

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한다.

-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통일교육의 기본원칙·추진목표와 방향
 2. 통일교육과 관련하여 각 부처 및 기관·단체의 협조에 관한 사항
 3. 통일교육에 관한 전문인력의 양성·지원에 관한 사항
 4. 통일교육실태의 조사·평가 및 시정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통일교육에 관한 중요한 사항
- ③ 통일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에 미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 ④ 통일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에 통일교육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5조 삭제 <2008.12.31>

제6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 ① 국가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통일교육의 실시, 통일문제연구의 진흥, 통일교육에 관한 전문인력의 양성·지원, 통일교육에 관한 교재의 개발·보급, 그 밖의 방법으로 통일교육을 활성화하여야 한다. <개정 2009.10.19>
- ② 국가는 통일교육을 하는 자(법인 또는 단체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09.10.19>
- ③ 지방자치단체는 지역 내 통일교육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통일교육을 하는 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재정적·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신설 2009.10.19>

제6조의 2 (공공시설의 이용)

통일교육을 하는 자는 통일교육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공공시설을 그 본래의 용도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용할 수 있다.

제6조의 3 (지역통일교육센터의 지정·운영)

- ① 통일부장관은 통일교육을 주된 목적으로 하거나 통일교육을 할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기관·단체 또는 시설(이하 “기관등”이라 한다)을 지역통일교육센터로 지정할 수 있다.
- ② 지역통일교육센터로 지정된 기관등의 장은 그 지정된 내용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통일부장관에게 그 사실을 신고하여야 한다.
- ③ 통일부장관은 지역통일교육센터로 지정된 기관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할 때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았을 때
 2. 통일교육을 할 능력이 크게 부족하다고 인정될 때
- ④ 통일부장관은 지역통일교육센터로 지정된 기관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6개월 이내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하여 업무정지를 명할 수 있다.
 1. 제3조에 따른 통일교육의 기본원칙을 위반하여 통일교육을 하였을 때
 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경비지원을 받거나 지원받은 경비를 목적 외의 용도에 사용하였을 때
 3. 제2항에 따른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
- ⑤ 통일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지역통일교육센터의 지정을 취소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 ⑥ 그 밖에 지역통일교육센터의 지정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7조 (통일교육의 반영)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설립한 교육훈련기관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회교육기관을 설치·운영하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훈련과정에 통일교육(제3조의2제1항에 따른 통일교육에 관한 기본사항을 포함한다)을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8조 (학교의 통일교육 진흥)

- ① 정부는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이하 “초·중등학교”라 한다)의 통일교육을 진흥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② 통일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통일교육(제3조의2제1항에 따른 통일교육에 관한 기본사항을 포함한다)이 초·중등학교의 교육과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교육과학기술부장관 또는 특별시·광역시·도 및 특별자치도 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에게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을 받은 교육과학기술부장관 및 교육감은 교육과정에 통일교육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09.10.19>
- ③ 정부는 대학 등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를 설립·경영하는 자에게 통일문제와 관련된 학과의 설치, 강좌의 개설, 연구소의 설치·운영 등을 권장할 수 있다.

제9조 (통일교육의 수강 요청 등)

- ① 통일부장관은 통일교육을 하는 자, 남북교류·협력사업에 종사하는 자, 통일대비업무에 종사하는 자, 그 밖에 통일교육을 받을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에게 통일교육을 받도록 요청할 수 있다.
- ② 통일부장관이 제1항에 따라 통일교육대상자를 선정하려면 미리 해당 행정기관 또는 단체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제9조의2 (통일교육 전문강사의 양성)

- ① 통일부장관은 통일교육원에 통일교육 전문과정을 개설하여 그 과정을 수료한 사람에게 통일교육 전문강사 자격을 부여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라 개설되는 통일교육 전문과정의 운영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통일부장관이 정한다.

<본조신설 2009.10.19>

제10조 (통일교육협의회)

- ① 통일교육을 하는 자는 효율적인 통일교육을 위한 협의·조정, 그 밖에 상호

간의 협력증진을 위하여 통일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통일교육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설립할 수 있다.

- ② 협의회의 조직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0조의2 (통일교육위원)

- ① 통일부장관은 통일교육 활동을 통하여 대국민 통일의지와 역량을 강화함으로써 평화통일 기반조성에 기여하기 위하여 통일교육위원을 위촉한다.
- ② 통일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통일교육위원으로 위촉한다.
1. 각급 교육기관 및 지역사회에서 통일교육 활동에 적극 참여하고 있는 사람
 2. 제9조의2에 따라 통일교육 전문과정을 수료한 사람
 3. 그 밖에 통일문제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 통일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
- ③ 통일교육위원은 다음 각 호의 활동을 수행한다.
1. 통일교육의 실시
 2. 통일교육 관련 행사의 지원
 3. 그 밖에 통일교육 활성화를 위한 사항으로 통일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활동
- ④ 통일부장관은 통일교육위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통일교육 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 ⑤ 이 법에 따른 통일교육을 실시하는 기관, 단체 등은 통일교육위원의 활동을 장려하기 위하여 각종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 ⑥ 통일교육위원의 위촉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09.10.19〉

제11조 (고발)

통일부장관은 통일교육을 하는 자가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침해하는 내용으로 통일교육을 하였을 때에는 수사기관 등에 고발하여야 한다.

부칙 <제5752호,1999.2.5>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중간 생략 －

부칙 <제9800호,2009.10.19>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통일교육 지원법 시행령

[일부개정 2010. 4.13, 대통령령 제22121호]

제1조 (목적)

이 영은 「통일교육 지원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통일교육기본계획)

- ① 통일부장관은 「통일교육 지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에 따라 수립한 통일교육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관계 기관 및 단체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② 통일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원활하게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기관 및 단체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으며, 협조를 요청받은 관계 기관 및 단체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협조하여야 한다.

제3조 (경비의 지원 등)

- ① 법 제6조제2항에 따라 국가가 통일교육을 하는 자(법인 또는 단체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게 지원할 수 있는 경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통일교육 시설·설비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비용
 2. 통일교육 자료의 개발 및 보급에 필요한 비용
 3. 통일문제 관련 조사 및 연구에 필요한 비용
 4. 통일 관련 강좌의 개설 및 운영에 필요한 비용
 5. 그 밖에 통일부장관이 통일교육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비용
- ② 통일부장관은 통일교육을 하는 자의 수행 능력, 전년도 실적 및 해당 연도의 사업계획 등을 고려하여 제1항에 따른 경비를 지원할 것인지를 결정하여야 한다.
- ③ 통일부장관은 법 제6조제2항에 따른 경비지원의 효과를 지원 대상자별로 3년마다 심사하여 제1항에 따른 경비를 계속 지원할 것인지를 결정하여야 한다.

- ④ 통일부장관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경비지원을 받거나 지원받은 경비를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자에 대하여 그 지원을 중지하거나 이미 지급한 경비를 회수할 수 있다.

제4조 (공공시설의 이용)

- ① 통일교육을 하는 자는 법 제6조의2에 따라 통일교육을 위하여 각급 학교의 강당, 구민회관 등 공공시설을 이용하려는 경우 미리 해당 공공시설의 관리자에게 협조를 요청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에 따라 협조를 요청받은 공공시설의 관리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협조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 (지역통일교육센터의 지정 등)

- ① 법 제6조의3제1항에 따라 지역통일교육센터로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지역통일교육센터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통일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통일부장관은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등기부 등본(신청인이 법인인 경우에만 해당한다)을 확인하여야 한다.
1. 정관(법인인 경우에만 해당한다)
 2. 통일교육 전문인력의 보유 현황 및 운용계획서
 3. 업무 수행에 필요한 시설·장비의 보유 현황 및 운용계획서
 4. 사업계획서(재정운용계획서를 포함한다)
- ② 통일부장관은 법 제6조의3제1항에 따라 지역통일교육센터를 지정한 경우에는 별지 제2호 서식의 지역통일교육센터 지정서를 신청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 ③ 지역통일교육센터로 지정된 기관·단체 또는 시설의 장은 제1항제1호 또는 제4호에 관한 사항이 변경된 경우 법 제6조의3제2항에 따라 통일부장관에게 그 사실을 신고하여야 한다.

제6조 (통일교육의 반영)

- ① 법 제7조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회교육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1.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이 설립한 교육훈련기관
 2. 「교원 등의 연수에 관한 규정」 제2조에 따른 연수기관
 3. 「평생교육법」에 따라 설치된 평생교육시설
 4.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로부터 통일교육을 위탁받은 기관
 5. 그 밖에 통일부장관이 지정하는 공공연수기관
-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설립한 교육훈련기관과 제1항에 따른 사회교육기관은 법 제7조에 따라 해당 교육훈련과정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통일교육을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2주 이상 3개월 미만인 교육훈련과정: 1시간 이상
 2. 3개월 이상 6개월 미만인 교육훈련과정: 4시간 이상
 3. 6개월 이상인 교육훈련과정: 8시간 이상
- ③ 통일부장관은 통일교육의 기준과 내용(법 제3조의2제1항에 따른 통일교육에 관한 기본사항을 포함한다)에 관한 지침을 정한 경우에는 그 지침을 관계 기관 및 단체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6조의 2 (학교의 통일교육 진흥)

법 제8조제2항에 따라 통일부장관은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이하 "초·중등학교"라 한다)의 교육과정에 통일교육이 반영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교육과학기술부장관 또는 특별시·광역시·도 및 특별자치도 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에게 요청할 수 있다.

1. 초·중등학교의 교육과정 중 창의적 체험활동 시간을 활용한 통일교육의 실시
2. 통일교육 관련 자료의 보급 및 활용
3. 「교원 등의 연수에 관한 규정」 제2조에 따른 연수기관에 통일교육 관련 과정 개설 및 교원을 대상으로 하는 통일교육 실시
4. 통일교육 관련 연구학교의 지정 및 운영 활성화
5. 초·중등학교 통일교육 실태 조사 및 관련 자료 협조
6. 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초·중등학교의 통일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통일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본조신설 2010.4.13〉

제7조 (통일교육협의회)

- ① 법 제10조에 따른 통일교육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개정 2010.4.13〉
 1. 통일교육에 관한 조사 및 연구
 2. 통일교육에 관한 자료 수집 및 간행물의 발간
 3. 통일에 관한 인식 제고 및 홍보
 4. 통일교육 종사자의 자질 향상과 복리 증진
 5. 통일부장관으로부터 위탁받은 업무
 6. 그 밖에 통일교육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② 협의회는 해당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협의회에 사무국과 지방 협의회를 둘 수 있다.

제8조 (통일교육위원)

- ① 통일교육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 ② 통일교육위원에게는 별지 제3호서식의 통일교육위원증을 발급한다.
- ③ 통일부장관은 통일교육위원에게 필요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0.4.13〉

부칙 〈제22121호, 2010.4.13〉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10년 4월 2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통일교육위원으로 위촉된 사람은 이 영에 따라 위촉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통일교육위원의 임기는 종전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2011 통일교육지침서 일반용

인 쇄 일 | 2011년 3월

발 행 일 | 2011년 3월

발 행 처 | 통일부 통일교육원 / www.uniedu.go.kr

주 소 | 서울시 강북구 4.19길 275 (142-715)
Tel (02)901-7173, 7176 / Fax (02)901-7082

편집디자인 | 애드원 커뮤니케이션즈 (02)2272-7571

인 쇄 | 사단법인 한국시각장애인 연합회

2011 통일교육지침서 · 일반용

www.uniedu.go.kr



통일부 통일교육원